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임 상 범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후
北京의 反革命 진압 운동

201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김 현 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후
北京의 反革命 진압 운동

임 상 범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김 현 주

인 준 서

김현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7년 6월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本稿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후 중국공산당의 정권 구축 과정을 북경에서의 반혁명 진압 과정을 통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은 중국공산당이 혁명 이후에 일어나는 반혁명적 반동에 대응하여 어떻게 자신의 정권을 안착시키려 했는가에 대한 고찰과 연결되어 있다.

중국공산당은 국민당으로부터 정권을 바꾸려는 자신의 행보에 제동을 걸고, 정권을 장악한 후에는 체제를 안정시키고 지지 기반을 확보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방해한 자들을 ‘반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진압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공산당과 국민당 사이에서 이루어진 정치 투쟁의 연속만은 아니었으며, 공산당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반혁명’이었던 것도 아니었다. 舊사회에서 세력을 떨친 자들 중 중국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하고 체제를 안정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던, 즉 국민당이 매복시킨 特務(간첩) 요원과 국민당과 관련이 있는 당파와 단체들, 여러 산업 부문에서 세력을 형성하여 소상인·노동자와 마찰을 빚고 있던 惡霸(악질 토호) 세력, 그리고 국민당 정부에 밀착하여 공산당에 반대하는 행보를 걸던 一貫道의 지도자들이 주요 반혁명 행위자로 지목되었다.

중국공산당은 그 과정에서 세 차례 「반혁명 진압에 관한 지시」를 공포하였다. 그 중 한국전쟁 발발 후 공포된 1950년 10월 10일의 지시(10·10지시)는 반혁명 진압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강경해진 입장이 드러나 있으며, 나아가 1951년 2월에는 「中華人民共和國懲治反革命條例」를 제정하여 반혁명 진압에 법적 강제력과 합법성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곧 대중이 전면에서 나서서 그들의 원한을 증폭시키는 규탄대회를 통해 법정이 아닌 광장에서, 법리가 아닌 박수에 의해 반혁명의 여부가 판

정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그리고 1951년 5월 15일에 毛澤東이 발표한 「반혁명 진압은 반드시 대중노선을 실행해야 한다」는 글은 이것을 하나의 체제로 정착시킨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연출한 毛澤東의 의도는 마르크스-레닌이 주장한 국가와 혁명에 대한 이론에서 혁명의 완성을 위해 부르주아 간접통치와는 다른, 인민의 직접 통치·참여를 통한 새로운 사회 운영 체계의 확립을 위한 방법론의 모색이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때의 반혁명 진압 규탄대회는 이후 毛澤東의 중국에서 여러 차례 사용되었던 대중을 동원하는 방식의 원형이 되었고 이제 반혁명은 중국 공산당만의 적이 아니라 전체 인민의 적이 되었으며, 이때부터 반혁명 진압은 하나의 ‘사회운동’이 되었다.

목 차

논문개요

서론	1
I. 북평 접관 시기 반혁명 세력의 정황과 중국공산당의 입장	8
II.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반혁명 진압 정책의 구체화	22
III. 반혁명 진압의 사회운동으로 전화	34
결론	51

참고문헌

Abstract

서론

이 글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중국공산당이 자신의 정권을 구축하는 과정을 북경에서의 반혁명 진압을 통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혁명에 반하는 ‘반혁명’에 대한 연구는 프랑스 혁명 연구에서 출발하였다. 1984년에 『반혁명: 이념과 행동, 1789-1804(La contre-révolution: Doctrine et action, 1789-1804)』를 출간한 프랑스의 혁명사가 자크 고드쇼(Jacque Godechot, 1907-1989)는 반혁명의 이념과 반혁명 투쟁 모두에서 舊문명의 한 측면을 볼 수 있다고 하면서, 반혁명 이론가들 대부분도 그들 나름으로는 혁명가였다고 결론지었다.¹⁾ ‘반혁명’은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인 1917년의 러시아 혁명에서도 혁명을 위협에 처하게 하는 두려운 힘으로 인식되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²⁾

중국의 경우에는 러시아 볼셰비키로부터 ‘반혁명’이라는 용어가 들어왔고, 중국공산당은 1920년대에 다른 정당들보다 이 단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였다. 당시는 혁명이 내우외환을 해결하는 근본 수단으로 여겨지며 신성시되었기 때문에 중국공산당, 국민당, 청년당 등이 서로 ‘혁명’이라는 용어를 독점하려 하였으며 ‘반혁명’이라는 표현은 자신과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적대적 세력에게 사용하였다. 1927년부터 시작된 北伐의 과정에서도 ‘반혁명’은 대립하는 세력이 서로를 비판하는 무기이자 상대방의 존재의 합법성까지 위협하는 담론이 되었다. 이렇듯 혁명과 반혁명은 정의와 비정의라는 양극으로 대치되었고, 이원적 대립 아래 양자 간 어떠한 타협의 공간도 허락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반혁명’의 낙인이 찍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³⁾

1) Jacques Godechot, 양희영 옮김, 『반혁명』, 서울: 아카넷, 2012. 8-11쪽.

2)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에서 반혁명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책들을 참고. Alexander Rabinowitch, 류한수 옮김, 『혁명의 시간: 러시아 혁명 120일 결단의 순간들』, 서울: 교양인, 2008; John Reed, 서찬석 옮김, 『세계를 뒤흔든 열흘』, 서울: 책갈피, 2005.

‘반혁명’은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평판을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1927년 3월 30일에 武漢國民政府가 「國民政府反革命罪條例」를 공포함에 따라 ‘반혁명’은 이때부터 형법이 규정하는 범죄 행위가 되었다. 중국공산당 역시 1931년 1월 7일에 중화민국 내부에서 국민당에 대항하는 또 다른 국가인 중화소비에트공화국을 수립하고 1934년에 「中華蘇維埃共和國懲治反革命條例」를 공포하여 반혁명죄의 개념과 이를 구성하는 범죄의 요건들을 적시하였다. 이후 계속해서 시기와 상황에 따라 명칭은 다르지만 중국공산당과 국민당 모두 ‘반혁명’을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였다.

중국공산당은 국민당으로부터 정권을 바꾸려는 자신의 행보에 제동을 걸거나, 정권을 장악한 후 체제를 안정시키고 지지 기반을 확보하려는 자신의 노력을 방해한 자들을 ‘반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진압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공산당과 국민당 사이에서 벌어진 정치 투쟁의 연속이 아니었으며, 공산당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반혁명’이었던 것도 아니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밀착되어 있던 구 사회에서 세력을 떨친 자들 중 중국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하고 체제를 안정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던, 즉 국민당이 매복시킨 特務⁴⁾(간첩) 요원과 국민당과 관련이 있는 당파와 단체들, 여러 산업 부문에서 세력을 형성하여 소상인·노동자와 마찰을 빚고 있던 惡霸(악질 토호) 세력, 그리고 국민당 정부에 밀착하여 중국공산당에 반대하는 행보를 걸던 一貫道의 지도자들이 주요 반혁명 행위자로

3) 王奇生, 「前言」, 「‘革命’與‘反革命’: 三大政黨的黨際互動」, 『革命與反革命』,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0.

4) 1950년 3월 28일자 사법부의 문서에는 “간첩은 일반적으로 정보를 몰래 정탐하는 것을 가리키고, 특무 역시 간첩 행위로 비교적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司法部關於懲治反革命條例的幾個問題的解答」(1950.3.28.), 中華人民共和國司法部 篇, 『中華人民共和國司法行政歷史文件匯編(1950-1985)』, 北京: 法律出版社, 1987. 740쪽.) 그리고 間諜罪는 외국의 간첩기관에 참가하거나 외국 간첩기관을 위해 중국공산당의 정보를 정탐하거나 훔치거나 제공하는 것이나 간첩기관이 파견한 임무를 받아들인 행위를 지칭하고, 特務罪는 국내 특무조직에 참가하거나 특무조직을 위해 정보를 훔치거나 정탐하거나 제공하는 것 및 특무조직이 파견한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張希坡 編, 『中華人民共和國刑法史』, 北京: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1998. 75쪽.)

지목되었다.

기존 연구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진행된 ‘반혁명’ 진압을 국민당과 중국공산당 간의 정치 투쟁의 연속으로 보거나, 중국공산당이 체제를 안정시키고 사회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작동시킨 것이라는 도식에만 머물러 있는 경향이 짙다.⁵⁾ 본고는 ‘반혁명’ 진압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중국공산당의 시각에 의존하여 진술하는 기존의 견해에서 탈피하여, 반혁명을 진압하려는 중국공산당의 정책과 반혁명 행위자들의 저항의 목소리를 함께 드러냄으로써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자 한다. 나아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규탄대회 [控訴會]를 통해 법정외 아닌 광장에서, 법리가 아닌 박수가 곧 판결이 되게 한 중국공산당의 의도와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반혁명’에 대한 처벌은 대중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았으며 ‘반혁명법’은 중국공산당만의 적

5) Julia C. Strauss, “Paternalist Terror: The Campaign to Suppress Counterrevolutionaries and Regime Consolidatio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50–1953”,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 44, Issue 1, Jan. 2002; Yang Kuisong(楊奎松), “Reconsidering the Campaign to Suppress Counterrevolutionaries”, *China Quarterly*, Vol. 193, March 2008; 楊奎松, 『新中國鎮反運動始末』(上), 『江淮文史』 2011-1; 楊奎松, 『新中國‘鎮壓反革命’運動研究』, 『史學月刊』 2006-1; 楊奎松, 『新中國鞏固城市政權的最初嘗試: 以上海‘鎮反’運動爲中心的歷史考察』, 『華東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4-5. 그 외 ① ‘반혁명죄’에 집중하여 반혁명죄가 중국에서 최초로 형법에 입법된 1927년부터 1997년에 명칭이 ‘危害國家安全罪’로 바뀔 때까지 반혁명죄의 발전과 소멸을 그린 郭薇의 『關於反革命罪的歷史考察』(中國青年政治大學碩士學位論文, 2007)이 있고, 1951년에 반혁명죄가 입법된 것은 중국공산당원의 정치 운동이 법제화의 궤도에 오른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한 沈瑋瑋의 『政治術語的法制化實踐: 論1951年前後的反革命罪』(『中國人民公安大學學報』 148-6, 2010)가 있다. 또한 반혁명죄가 입법되기 전후인 1950-1951년 간 이루어진 중국공산당의 반혁명 진압에서, 특히 반혁명법에 대한 재판과 처벌의 과정에서 양산된 汚名化가 주는 작용에 대해 조명한 陳寒非의 『汚名身體: 鎮壓反革命的司法實踐』(『政治法學研究』 2014-2)이 있다. ② 이 시기 반혁명 진압 운동의 기간의 설정만을 연구한 논문도 있다. 李格, 『鎮壓反革命運動歷時一年說質疑』, 『當代中國史研究』 2008-5. ③ 반혁명 진압에 나타난 毛澤東의 사상을 연구한 논문도 있는데, 이 글에서는 毛澤東이 반혁명 진압의 과정 중 지나침이 심해진 1951년 3월부터 사형을 통제할 것을 사례로 들며 “사형의 집행에 신중했다.”고 평가하였으며, 반혁명 진압에 ‘사형유예제도’를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毛澤東이 혁명에 있어서 인도주의를 발휘했다고 분석하였다. 陳竹君, 『建國初期毛澤東鎮壓反革命思想論評』, 『北京市人民警察學院學報』 2008-6. ④ 그리고 北京市는 아니지만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의 반혁명 진압을 연구한 박사학위논문으로는 丁以德의 『江蘇省鎮壓反革命運動的社會歷史考察』(南京大學 博士學位論文, 2011)과 李露의 『建國初期‘鎮反’刑事政策的實踐研究(1950-1953)』(西南政法大學 博士學位論文, 2009)가 있다.

아니라 전체 인민의 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대중 동원 방식은 이후 毛澤東의 중국에서 여러 차례 사용되었던 대중 동원 방식의 원형이 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를 위해 본고가 다루는 공간은 수도 北京이다. 이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크게 두 측면에서이다. 건국 초 광활한 면적을 효율적으로 통치할 만큼 정권 기반이 공고하지 못했던 중국공산당은 전국을 행정구로 나누어 각지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중앙의 정책을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북경이 속한 華北局의 ‘반혁명’ 진압에 관한 경험과 계획은 종종 中國共產黨中央委員會(이하 중공중앙으로 약칭)에 의해 우수한 사례로 선정되어 다른 지역이 참고할 수 있도록 회람되었다.⁶⁾ 이렇게 중공중앙이 각지의 경험을 총결하여 전체적인 방침과 정책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華北局의 사례가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점에서 북경 지역은 매우 가치 있는 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北平⁷⁾이 포함된 華北人民政府는 中央人民政府의 前身이

- 6) 정확히 이러한 내용의 지시가 담긴 문건으로는 4건이 있다. ① 1950년 11월 중공중앙은 각 지역에 반혁명을 진압하는 활동에 관한 北京市委의 보고가 매우 좋다면서 참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中央關於北京市委鎮壓反革命活動報告的批語和復電」(1950.11.22.),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建國以來毛澤東文稿』(이하 『毛澤東文稿』로 약칭)(1949.9-1950.12),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1. 675쪽. ② 1951년 2월 25일에도 “아래는 북경의 반혁명 진압 계획이니 연구하라.”면서 각지에 해당 문건을 전달하였다. 「大都市應當認真地嚴厲地大規模地鎮壓反革命」(1951.2.25.), 「建國初期鎮壓反革命文電十五編」, 『黨的文獻』 2-2, 1988. 34쪽. ③ 같은 해 3월 24일, 毛澤東은 上海市委에게 반혁명 진압에 관하여 지적하면서 “북경의 경험에서 보듯이 우리들의 일을 잘해야만 민주인사와 부르주아계급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關於同意上海市委鎮反計劃給饒漱石的電報」(1951.3.24.),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建國以來毛澤東文稿』(이하 『毛澤東文稿』로 약칭)(1951.1-1951.12),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1. 192쪽. ④ 또한 같은 해 5월 7일, 중공중앙은 다른 지역에게 전보를 보내어 “華北局的 5월 6일 반혁명 진압 문제에 관한 지시를 전달한다. 중앙이 생각하기에 華北局的 지시는 완전히 정확한 것이다. 각지 모두 이에 따라 실행하라.”고 지시하였다. 「將捕殺批准權分別收回到地專和省級」(1951.5.7.), 「建國初期鎮壓反革命文電十五編」, 『黨的文獻』 2-2, 1988. 36쪽.
- 7) 1927년 蔣介石이 南京에 國民政府를 세우면서 수도를 南京으로 지정하였고 동시에 북경이라는 지역명은 ‘北平’으로 격하되었다. 이후 역사적 과정을 거쳐 1949년 9월 27일의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계 전체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를 북경으로 결정하면서 다시 수도의 의미인 ‘北京’을 회복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변경 과정에 유의하면서 시기에 따른 표기를 하고자 하며, 다만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에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북경’으로 표기하겠다.

며, 華北人民政府가 공포한 법률·법규 등이 이후 「中華人民共和國懲治反革命條例」를 포함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제 건설에 중요한 작용을 했기 때문이다. 1948년 5월 9일에 華北 지역의 양대 근거지였던 쯤冀魯豫와 쯤察冀의 두 邊區가 합병되면서 설립된 華北局(제1서기: 劉少奇)은 9월 26일에 정식 출범한 華北人民政府를 통솔하였다. 華北人民政府는 董必武를 주석으로 하여 北平市, 天津市와 華北, 山西, 平原, 綏遠, 察哈爾 5개 省을 관할지역으로 삼았다. 이후 毛澤東이 中央人民政府 주석 신분으로 「撤銷華北人民政府令」을 통해 “중앙정부의 많은 기관은 華北人民政府 부속의 유관기구를 기초로 삼아 신속하게 건립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13개월 만에 폐지되었지만, 중국공산당이 국민당의 「六法全書」를 폐지한 이후 법제에 공백이 있던 상황에서 華北人民政府 시기에 공포한 200여 개의 법령·법률·법규(감형과 가석방제도의 수립, 사형재심제도 수립, 중재절차의 활용 등)는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의 입법에 기초적인 역할을 하였다.⁸⁾ 이러한 내용은 ‘반혁명’을 진압하는 법적 근거로 작동한 「中華人民共和國懲治反革命條例」에도 적용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들이 북경 지역의 연구에 가치를 부여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반혁명 진압 운동의 지속 시기에 대해서는 1950년부터 1953년 사이에서 1년 설과 최장 3년까지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서 1950년 10월 10일의 「반혁명 활동 진압에 관한 지시」(10·10지시)의 발표부터 1951년 5월에 있었던 제3차 전국공안회의 전후까지를 최고조기에서 쇠퇴기로 보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본고는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전세가 중국공산당 측으로 기울면서 北平 接管⁹⁾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던 1948년부터, 북경에서의

8) 「編者的話」, 王娜, 「華北人民政府時期司法制度的文本研究」, 孫琬鍾 主編, 『共和國法治從這里啓程』, 北京: 知識產權出版社, 2015. 212-213쪽, 223쪽.

9) 이원준의 연구에 따르면 국공내전 초기에 중국공산당은 도시 점령을 ‘接收’ 또는 ‘接管’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였고, 후반기에 접어들면서는 대부분의 경우 ‘接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接’은 ‘接收’를, ‘管’은 ‘管理’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이원준은 ‘接管’을 ‘도시를 접수하여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각급 정권의 건립을 완성하는 것’으로 정의

반혁명 진압이 사회운동으로 전화되는 1951년 5월까지로 연구의 시기를 한정하였다. 이것은 중국공산당이 북경의 장악을 마주한 시점에서부터 시작하며, 사법 처분에 국한되어 있던 반혁명법에 대한 처벌이 규탄대회를 통해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그 중심이 변화되는 양상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는 기간이다.

본고는 이상의 설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할 것이다. 먼저 제1장은 반혁명 진압 운동이 발동되는 배경을 관찰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중국공산당이 북경 집권을 직면한 시기에 그들이 파악한 반혁명 세력의 정황과 그들에 대한 입장과 조치, 이에 대해 반혁명 세력이 느낀 당혹감과 위기의식의 연쇄 작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내부에는 새로운 사회의 도래를 앞두고 고조되는 긴장감이 존재한다. 제2장에서는 중국공산당이 중국 전역의 집권당이 되면서 구체화된 반혁명 진압의 양상과 그에 상응하여 거세진 반혁명 세력의 저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때 세 차례에 걸쳐 공포된 「반혁명 진압에 관한 지시」에 담긴 내용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毛澤東의 반혁명 진압에 대한 구상의 면모를 세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3장에서는 반혁명 진압의 수단으로 작동한 법과 규탄대회를 살펴보고 결과적으로 반혁명 진압의 증폭기 역할을 한 규탄대회를 개최한 중국공산당의 의도와 그들의 의도대로 그것이 작동될 수 있었던 이유를 다각도로 규명하고자 한다.

역사에는 ‘혁명’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한 시대에 관한 균형 잡힌 연구를 위해서는 혁명과 반혁명, 양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고가 진행하는 논지 전개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후 진행된 반혁명 진압의 역사적 실체에 대한 연구의 균형을 맞추는데 일조하고, 중국공산당이 혁명 이후에 일어나는 반혁명적 반동에 대응하여 어떻게 자신의 정권을 안착시키려 했는가에

하였다. 이원준, 「중국공산당의 도시 통치체제 형성과정 분석: 건국 전후의 北京 接管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4-5쪽.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에 까지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I. 북평 점관 시기 반혁명 세력의 정황과 중국공산당의 입장

北平이 중국공산당에 의해 장악되기 이전까지 중국공산당의 정책은 도시 점관이 아닌 농촌 근거지의 토지개혁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1947년 가을 이후 전선에서 중국공산당의 반격이 시작되자 전국적 통일정권의 건설이라는 과제 앞에서 도시 점관 정책에 대한 당 중앙의 관심이 제고되었고, 1948년 2월에 중공중앙은 그동안 도시 점관에 대해 구체적인 방침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각 中央局과 中央分局으로 하여금 도시 점관의 경험을 정리하여 3-4개월 내에 보고하도록 하였다.¹⁰⁾ 이때 東北局 瀋陽의 점관 경험은 北平 점관의 방침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北平市委 제1부서기 葉劍英은 北平市委의 간부를 대상으로 점관 방침에 관해 설명하면서 瀋陽의 경험에 따라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¹¹⁾ 그리고 北平의 점관 절차에 대한 지침은 華北軍政長官公署 사령장관으로서 北平·天津 지역을 담당하던 국민당군 傅作義와의 협상으로 국민당과 중국공산당 간에 공식 휴전이 시작된 1949년 1월 22일을 전후로 보다 구체화되었다.¹²⁾ 北平市人民政府는 2월 2일에 北平으로 집무를 옮겼으며, 같은 날 北平시장 葉劍英은 「북평시인민정부 입성 업무 포고」를 발표하여 신민주주의의 新北平을 건립하기 위해 분투하자고 하였다.¹³⁾

이러한 중국공산당의 구상 속에서 北平을 안정적으로 점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 바로 반혁명 세력의 저항이 그것이었다.

10) 「中共中央關於注意總結城工作經驗的指示」(1948.2.25.), 中央檔案館 編, 『中共中央文件選集』 第17冊, 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2. 69-70쪽; 이원준, 앞의 논문, 3쪽, 12-13쪽.

11) 「葉劍英在北平委高級幹部上的報告」(1948.12.19.), 『北京黨史』 1999-1. 27쪽; 이원준, 위의 논문, 55쪽.

12) 이원준, 위의 논문, 86쪽.

13) 「北平市人民政府入城辦公佈告」(1949.2.2), 北京檔案館 編, 『北平和平解放前後』, 北京出版社, 1988. 98쪽.

반혁명 세력이 진행하는 파괴 활동을 진압하고 여타 파괴 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수도로 정한 北平을 접수하여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접관의 과정에서 중국공산당이 해야 할 첫 번째 역할이었으며¹⁴⁾, 신속하게 혼란한 상황을 해결하고 잠복해 있는 무장한 세력과 특무 조직을 숙청하는 것은 인민해방군이 北平에 입성하기 전 준비해야 할 공식적인 임무였다.¹⁵⁾

이때 국민당의 特務¹⁶⁾(간첩) 요원과 국민당과 관련이 있는 당파와 단체들, 여러 산업 부문에서 세력을 형성하여 소상공인·노동자와 마찰을 빚고 있던 惡霸(악질 토호) 세력, 그리고 국민당 정부에 밀착하여 중국공산당에 반대하는 행보를 걷던 一貫道の 지도자들이 주요 반혁명 행위자로 지목되었다.

국민당 통치 시기 동안 특무는 헌병, 경찰과 함께 사회를 통제하는 핵심 세력을 이루었다. 특무 기관인 國民政府軍事委員會查統計局(약칭은 軍統局)과 中國國民黨中央執行委員會查統計局(약칭은 中統局)은 헌병사령부 및 경찰의 수뇌부와 함께 매월 한차례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각종 통로를 통해 경찰 기구에 침투하였고 결정적인 작용을 발휘하였다. 특히 국민당의 陳果夫·陳立夫 형제를 중심으로 하는 특무 최대 계파인 CC파는 전국 경찰의 중추 기관인 內政部를 장악했으며, 특무 기관인 軍統局 第三處(특무 행동처)의 警政科는 경찰의 최고 지도 세력으로 각 지역의 경찰국 국장은 대부분 여기에서 파견되었다고 할 정도였다.¹⁷⁾

14) 「中共中央華北局對平津地下黨在接管城市中應做工作的指示」(1948.12.13.), 北京市檔案館·中共北京委黨史研究室 編, 『北京市重要文獻選編』(이하 『選編』으로 약칭)(1948.12-1949), 北京: 中國檔案出版社, 2001. 4쪽.

15) 「中共北平市委關於入城前所做的準備工作向中共中央及華北局的報告」(1948.12.22.), 위의 책, 22쪽.

16) 1950년 3월 28일자 사법부의 문서에는 “간첩은 일반적으로 정보를 몰래 정탐하는 것을 가리키고, 특무 역시 간첩 행위로 비교적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규정되어 있다.(「司法部關於懲治反革命條例的幾個問題的解答」(1950.3.28.), 中華人民共和國司法部 篇, 『中華人民共和國司法行政歷史文件匯編(1950-1985)』, 北京: 法律出版社, 1987. 740쪽.) 그리고 間諜罪는 외국의 간첩기관에 참가하거나 외국 간첩기관을 위해 중국공산당의 정보를 정탐하거나 훔치거나 제공하는 것이나 간첩기관이 파견한 임무를 받아들인 행위를 지칭하고, 特務罪는 국내 특무조직에 참가하거나 특무조직을 위해 정보를 훔치거나 정탐하거나 제공하는 것 및 특무조직이 파견한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지칭한다.(張希坡 編, 『中華人民共和國刑法史』, 北京: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1998. 75쪽.)

北平을 20년이 넘게 집권해 온 국민당은 중국공산당과의 내전에서 전세가 기울자 패전할 것을 예상하고 퇴각에 앞서 이러한 특무 기관의 요원을 각지에 잠복시켰다.¹⁸⁾ 이들에게는 중국공산당 간부의 암살, 주요 시설물 폭파, 철로와 교량의 파괴 등의 임무가 주어졌다.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파악한 華北局은 1948년 12월 13일, 국민당 군대·국가 기관·학교 등 각 부문의 담당자에게 만일 이들 부문에서 파괴 행위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중국공산당원을 파견하여 전범과 특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만일 그들이 파괴행위를 진행한다면 즉시 체포하여 주무기관으로 넘기도록 당부하였다. 이와 동시에 인민해방군에게는 입성하는 과정에서 “악의 수괴는 반드시 처벌하고, 협박에 못 이겨 추종한 從犯은 죄를 묻지 않고, 공을 세운 자는 포상한다”는 당시 중공중앙의 기본 방침을 선전하게 하였다.¹⁹⁾

중국공산당이 파악한 北平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국민당 특무 조직은 中統局 및 그 부속 조직, 軍統局 및 그 부속 조직, 國防部第二廳 및 그 부속 조직이었고, 이들에 소속된 특무 요원의 수는 약 7,000명으로, 여기에 靑工先鋒隊와 傅作義, 閻錫山이 이끄는 특무 조직과 미국, 영국 등이 설치한 간첩 기구를 모두 합하면 110여 개의 조직에 8,588명의 특무 요원이 존재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 여기에 國民黨北平市黨部, 三民主義青年團, 民主社會黨, 中國青年黨 등 국민당과 관련된 당과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6,000여 명과 소속이 불분명한 특무 약 2,000명을 합하면 당시 北平시에 존재하던 특무 및 반동적인 당·단체에 가입되어 있던 인원의 총 수는 약 16,000여명이 넘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⁰⁾

17) 임상범, 「북경 지역 경찰본부의 조직 내용」, 『대구사학』 78, 2005. 262쪽.

18) 於行前, 「北平解放初期的肅特鬭爭」, 中共北京市委黨史研究室·北京市公安局 編, 『蕩滌污垢—建國初期北京公安工作紀事』, 北京出版社, 2000(이하 『蕩滌污垢』로 약칭). 99-100쪽.

19) 「中共中央華北局對平津地下黨在接管城市中應做工作的指示」(1948.12.13.), 『選編』(1948.12-1949), 3-7쪽.

20) 「中共中央北平市委關於國民黨、三青團及特務機關的處理辦法」(1949.1.27.), 中央檔案館 編, 『

중공중앙 내부에서는 이들의 세력을 간과하고서는 순탄하게 北平을 점관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다. 平津前線司令部는 1949년 1월 16일에 傅作義에게 직접 보낸 최후통첩에서 무기를 내려놓고 문화 유물과 공유·사유 재산, 무기, 탄약, 문서 등을 파괴하지 않아야만 ‘인민의 양해’를 구하여 전범으로서의 처벌을 감경하거나 사면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하였고,²¹⁾ 이러한 흐름 속에서 1월 22일, 北平 점관에 관한 조인식이 막 완료되었을 때 傅作義는 국민당의 특무 중 핵심 요원만 懷仁堂에 모아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北平警察局局長 楊清植, 北平警備司令部 稽査處處長 毛惕園, 軍統北京站站長 王蒲臣·徐宗堯, 北平支台台長 閻守仁 등 10여명에게 傅作義는 「和平協議」에 이미 조인했다고 말하면서 특무 활동을 중지한다면 그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말하였다.²²⁾ 이렇듯 중국공산당은 혼란한 현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반혁명 세력을 철저히 진압하며 이들의 파괴 행위를 방지하는 일을 자신들의 최우선 당면 과제로 인식하였다.

1월 31일에 중국공산당이 北平을 점관한 후에도 市公安局이 인식한 최우선 과제는 사회 치안 강화와 이들 특무 및 국민당과 관련이 있는 당과 단체의 조직원을 진압하는 일이었다. 국민당은 北平을 20년이 넘게 지배해왔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들의 역량은 클 수밖에 없었으며, 국민당 군대는 퇴각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許惠東과 같은 비밀요원이 무수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중공중앙의 판단이었다.²³⁾

중공중앙은 北平에 존재하는 국민당 특무 요원과 중국공산당에 반동적인 당과 단체를 한눈에 파악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신속한 등록

中共中央文件選集』第18冊, 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2. 93-94쪽; 北京市地方志編纂北平市委 編, 『北京志』卷11(政法卷)第25冊(公安志), 北京出版社, 2003. 115쪽; 於行前, 「北平解放初期的肅特鬪爭」, 『蕩滌污垢』, 99쪽.

21) 「林彪·羅榮桓爲敦促和平解決北平問題致傅作義函」(1949.1.16.), 『北平和平解放前後』, 64쪽; 이원준, 앞의 논문, 88쪽.

22) 於行前, 「北平解放初期的肅特鬪爭」, 『蕩滌污垢』, 100쪽.

23) 彭眞, 「在市治安工作會議上的講話」(1949.2.19.), 『選編』(1948.12-1949), 158쪽.

[登記]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특무 요원 및 국민당과 관련이 있는 당과 단체 조직원의 자수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중국공산당에 밀고하고 공산당원이 그들을 체포하는 일에 협조하기만 한다면 처벌을 감면해준다는 것이 등록의 취지였다. 그리고 자수한 특무 요원에 대해서는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였다.

1월 27일, 중공중앙은 국민당, 삼민주의청년단 등을 반동적인 당과 단체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처리 방법을 발표하였다. 반동적인 당과 단체, 특무 기관으로 규정된 조직은 그들의 공공재산이 몰수되고 조직의 해산과 함께 모든 활동이 금지되었다. 그리고 이들 당과 단체의 각급 위원회 위원과 특무 조직의 핵심 요원은 시정부나 中國人民解放軍 北平市軍事管制北平市委(이하 北平市軍管會로 약칭)²⁴⁾가 규정한 기관 혹은 市公安局에 가서 본인의 신분을 등록하고 서류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되었다.²⁵⁾

24) 北京에 진입한 후 즉시 北平市軍管會를 설립하고 군사관제를 실행한다는 것이 중공중앙의 입장이었다. 군사적 기능과 함께 강력한 행정관리의 기능을 겸비한 기구를 새로 점령한 도시에 건립함으로써 군사적 통제 아래 당의 집관 정책을 정확하게 집행하고 집관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었다. 北平市軍管會가 黨·政·軍의 책임자를 임명한 1948년 12월 13일, 葉劍英이 北平市장이자 北平市軍管會의 주임으로 임명되었고, 葉劍英은 24일 간부대회에서 北平市軍管會의 임무와 조직기구, 공작방식 등에 대하여 교육하였다. 그는 군사관제를 실시하는 첫 번째 이유는 도시 점령 후에도 남아있을 잠복한 반동 세력과 특무 조직을 숙청하기 위한 것이며, 두 번째 이유는 신민주주의 도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3-5개월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中央軍委關於戰設部署及平津地區黨政軍負責人任命的電報」(1948.12.13.), 『選編』(1948.12-1949), 2쪽; 「中共北平市委關於如何進行接管北平工作的通告」(1948.12.21.), 위의 책, 15-16쪽; 「葉劍英在北平市委高級幹部會上的報告」(1948.12.19.), 『北京黨史』 114-1, 1999. 26쪽; 이원준, 앞의 논문, 36-37쪽, 106쪽.

25) 이들이 작성하는 등록표에 포함된 내용은 ① 성명, 성별, 연령, 출생지, 주소, 직업, 학력, 사회 경력, 연락처, ② 가정 경제 상황과 가족의 상황, ③ 반동 조직에 가입한 경유(시기, 소개자, 소속 조직, 직무 등), ④ 그가 이해한 반동 조직의 상황과 관련자, ⑤ 반동 조직을 탈퇴하겠다는 선언과 이후 영원히 인민정부 및 인민해방군의 활동에 반하는 활동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선언 등이었다. 상술한 인물이 등록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아래에 열거한 물품들을 제출해야 했다. ① 당증, 단체증, 특무 증명서, 휘장 및 기타 모든 반동 서류, ② 비밀 문건, 선전 물품, ③ 기관 등기대장, ④ 무기 탄약, 무선 통신, 암호 및 기타 위반품, ⑤ 그가 알고 있는 반동 조직의 관련자, ⑥ 그가 담당한 모든 반동 조직의 재산, 기물 및 물자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 이들 당과 단체 중의 중요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 및 중요한 특무 공작자는 반드시 일정한 기간 동안 공민권이 정지되었고, 등록된 기관이 규정한 기일(매일, 3일, 일요일)마다 일정한 기관에 본인의 행동을 보고해야 했다. 다만 신속하고 자발적으로 자수하고 무기, 무선통신기, 중요한 문건, 서류를 반납한 자 및 그가 알고 있는 모든 반동 비밀 조직 및 잠복해 있는 요원을 진실하게 보고하여 용의자의 체포에 공헌한 자, 등기 공작

이후 2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등록 작업이 진행되었다. 北平市公安局 偵訊處는 北長街 老爺廟 18호에 등록처를 설치한 후 우선 北平警備司令部 監察處의 聶士慶 등 몇몇의 핵심 특무 요원을 체포하여 설득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결과적으로 聶士慶이 자백에 나서자 그의 휘하 순찰대 102명의 軍統 특무들의 자수가 잇달았다. 2월 1일부터 29일까지 한 달간 자수한 특무 요원은 모두 363명이었다. 중공중앙은 이러한 자수를 진행한 결과 특무 조직의 진영이 와해되었고, 그때까지 생각이 확고하지 못한 채 갈림길에서 방황하던 국민당 특무요원을 더욱 포섭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²⁶⁾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3월 3일에 발표된 치안과 반혁명 숙청 업무에 대한 彭眞의 글을 살펴보면 특무의 자수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정도가 부족하고 그들이 제출하는 증거 서류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되어 있다.²⁷⁾ 彭眞의 지적 이후 3월 5일 市公安局의 「특무분자의 등록에 관한 포고」를 시작으로 같은 달 11일, 北平市軍管會는 특무에 대한 등록 업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는 내용의 「북평시 국민당 특무요원 회개 등기 신청·실시 방법에 관한 포고」를 발표하였다. 전체 9개 조목으로 구성된 이 포고문은 지난 1월 27자 지시와 큰 차이는 없으나, 등록자인 특무 요원 혹은 반동적인 당과 단체의 조직원이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서류(본인의 戶口표, 국민신분증, 반명함판 사진 2장, 회개서, 등록표 2부)가 적시되어 있고, 심사가 종료되어 자유의 신분이 되기 전까지는 등록자의 주소 이전과 출국이 금지되는 등²⁸⁾ 조치가 더욱 치밀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에 특별한 공헌을 한 자는 사정을 참작하여 그 죄를 감면해주거나 보상해주도록 규정하였다. 「中共中央北平市委關於國民黨、三青團及特務機關的處理辦法」(1949.1.27.), 『中共中央文件選集』 第18冊, 93-97쪽.

26) 於行前, 「北平解放初期的肅特鬪爭」, 『蕩滌污垢』, 103쪽.

27) 彭眞, 「關於治安與肅反工作(1949.3.3.)」, 『選編』(1948.12-1949), 213-214쪽.

28) 「北平市軍管會關於北平市國民黨特務人員申請悔過登記實施辦法的布告」(1949.3.11.), 『選編』(1948.12-1949), 241-244쪽.

1949년 3월 24일까지 본인의 신분을 등록하고 당에 의해 처리된 특무 요원(여기에는 流散官兵 포함)은 22,102명이었고²⁹⁾, 이들 반혁명 세력에 대한 등록 절차는 1950년 2월 말에 완료되었다. 등록 절차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회고는 대체로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北京市委가 5월 10일자로 제출한 「반동적인 당·단체 특무 등기 문제에 관해 중앙·화북국에 지시를 요청하는 보고」에는 다음과 같이 진술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등록 전 여러 부분들에 대하여 걱정하였다. 신문에 보도되어 자신의 체면이 깎이게 될까 두려워하였고 구류 혹은 의무적으로 받게 될 훈련에 대하여 염려하였다. 그러나 일단 등록 절차를 준수하기만 하면 당의 처리가 매우 관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그들은 이 절차를 통해서 마음의 고통을 덜 수 있었다고 고백하였다.”³⁰⁾ 결과적으로 등록 절차를 통해 중국공산당원은 자신들에 대해 적대적인 대상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에 대한 분류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³¹⁾

한편, 선농시장, 삼각시장, 공평시장 등 당시 번영하는 시장을 중심으로 여러 업종의 점포 및 攤販³²⁾이 밀집해 있던 天橋 일대의 분노업, 가축업, 목재업, 과일업, 담배업 등의 여러 업종에는 국민당 정부 관료와의 유착 관계를 통해 세력을 형성하고 독점판매권 등을 취득하여 소상공인 및 노동자와 마찰을 빚고 있던 세력이 있었다.³³⁾ 중국공산당은 이들을 악패로 규정하였고 반혁명 세력으로 지목하였다. 공산당원이 판단하기에 이들은 집권당이 국민당

29) 「北平市治安北平市委關於治安運動的指示」(1949.3.24.), 『選編』(1948.12-1949), 263쪽.

30) 「中共北京市委關於反動黨團特務登記問題向中央、華北局的請示報告」(1950.5.10.), 北京市檔案館·中共北京市委黨史研究室 編, 『北京市重要文獻選編』(1950), 北京: 中國檔案出版社, 2001. 186-188쪽.

31) Yang Kuisong(楊奎松), “Reconsidering the Campaign to Suppress Counterrevolutionaries”, p.104.

32) 攤販의 정확한 정의는 복잡하나 크게 보아 중국의 노점상을 가리킨다. 攤販에 대해서는 박현미, 「국공내전시기 국민정부의 攤販 정책과 반향: 1945-1949년 北平을 중심으로」(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를 참고.

33) 국민당 통치 시기 북경에서 악패와 노동자 간에 일어난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임상범, 「혁명 시대의 일상 폭력: 20세기 전반기 北京 거리에서 발생했던 금전 관련 사건들」(『중국학보』 55, 2007)에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에서 중국공산당으로 바뀌게 될 경우 기존에 유지해오던 자신의 권력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여 중국공산당에 해가 되는 유연비어를 유포하면서 지지 기반을 확보하려는 중국공산당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었다.

중국공산당이 파악하고 있던 천교 일대에서 유명한 악패는 ‘假善人’(대중이 붙인 별명) 孫鴻亮, ‘東霸天’ 張德泉, ‘西霸天’ 福德成, ‘南霸天’ 孫永珍, ‘北霸天’ 劉翔亭, ‘林家五虎’의 林竹賢, ‘座地虎’ 白文光 등으로 모두 靑幫의 지도층이었다. 1926년을 전후하여 청방은 천교 일대에서 빠르게 발전하여 천교 전체를 통제했으며 이 지역 최대의 세력이 되었다.³⁴⁾

청방은 清代 민간 비밀결사 중 하나로, 고향을 떠나온 근대 공장의 노동자들은 생존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겪은 후 청방, 紅幫과 같은 幫會를 통해 가상의 혈연관계를 맺고 전통적인 대인관계를 구축하였으며, 의지할 곳이라는 정감과 안전에 대한 보장을 얻었다.³⁵⁾ 청방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중국공산당은 이들이 1927년 4·12 사건에 연루되었고, 중일전쟁 시기에는 일본 특무 기관과, 일본의 투항 후에는 국민당 정부 및 특무 기관과 깊은 관련을 맺었다고 파악하였다.³⁶⁾

그리고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소상인 및 노동자와 마찰을 빚고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천교 일대에서 노점을 하는 사람들이나 기예를 팔아 생활하던 사람들은 모두 청방이나 후술할 일관도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그곳에서 터를 잡기 어려웠다. 분노 수거를 주업으로 하는 분노처리업 노동자(똥장수)들은 퍼낸 똥은 분노를 햇볕에 말려 농민에게 팔아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이들은 분노채취 구역의 소유자인 분도주와 노동자에게 숙식과 업무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해 주는 분노창고 소유자인 분창주에 의해 빈번하게 임금이 체불되었고 그나마 임금이 지급될 경우에도 그것으로는 신발 한 켤레도 사지 못할

34) 陳建亭·李萬啓·毛殿良, 「鎮壓天橋惡霸」, 『蕩滌污垢』, 205-206쪽.

35) 邵雛, 『秘密社會與中國革命』, 北京: 商務印書館, 2010. 527쪽.

36) 陳建亭·李萬啓·毛殿良, 「鎮壓天橋惡霸」, 『蕩滌污垢』, 205-206쪽.

정도였다고 한다.³⁷⁾ 건설업의 경우에는 包工頭라는 중간관리자에 의해 노동 시장이 독점되어 있었는데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거나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고용하려 할 때 이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였기 때문에 포공두는 노동자들의 불만 대상이었다. 일례로 건설업에서 악패로 지칭되던 李光護가 1939년 7월 일본으로부터 공사 하청을 받았을 때 그는 42명의 건설업 노동자에게 長辛店에 가서 담을 쌓으면 매달 태환권 5원(당시 일반적인 노동자 월급의 1.5배)에 삼시 세끼 만두를 먹을 수 있다고 유인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노동자들에게 맡겨진 일은 일본 부대에서 하는 힘든 노동이었으며, 노동자들은 만두가 아닌 밀가루 面片만을 먹을 수 있었고 따뜻한 물조차 마실 수 없어 많은 노동자들이 배탈이 나는 사건이 있었다.³⁸⁾

중국공산당은 그들이 악패라고 지칭한 자들의 이러한 요소들을 포착하여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여러 업종에 포진해 있는 악패 세력을 분쇄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일찍부터 工會 [노동조합]³⁹⁾의 설립과 노사협의로 이어졌다. 중국공산당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의 조직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였다. 전국적으로 工會를 설립하려는 시도는 1948년 봄 무렵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월 초부터 중공중앙은 6월에 하얼빈에서 개최될 예정(실제로는 8월 개최)이었던 全國各解放區工人代表大會를

37) 신규환, 『북경똥장수: 어느 중국인 노동자의 일상과 혁명』, 서울: 푸른역사, 2014. 53-54쪽; 韓晉昆, 「解放初期反行業惡霸的鬭爭」, 『蕩滌污垢』, 154-156쪽.

38) 韓晉昆, 「解放初期反行業惡霸的鬭爭」, 『蕩滌污垢』, 159-161쪽; 임상범, 『현대중국의 출발』, 서울: 일조각, 2000. 205쪽; 장윤미, 「개혁시기 중국 신노동계급의 형성과 지연망(地緣網) 노동관행의 부활」, 『현대중국연구』 111-1, 2009. 107쪽, 121-122쪽.

39) 윤희진의 연구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에는 중국공산당이 도시 통치를 시작하면서 工會를 도시주민의 주요한 조직 형식으로 상정하였으며, 당의 정책과 지도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工會는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능보다는 생산현장에서 생산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중국공산당의 정책과 의지를 관철시키는 기구라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 윤희진, 「中華人民共和國 도시주민 조직 방식의 형성: 일본 점령기에서 건국 초기(1937-1954)의 北京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77쪽; 윤희진, 「黨治의 원칙과 工會: 1949년 前後의 北京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65, 2015. 183-184쪽.

준비하였고 장차 중국공산당이 지도할 전국적 工會를 설립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北平市委가 본격적으로 노동자의 조직화에 관한 구상에 들어간 것은 1949년 1월 초였던 것으로 보인다. 北平市委는 생산의 발전을 위하여 노동운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위하여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분야별로 각종 工會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⁴⁰⁾

劉少奇는 1949년 4월에 北平市 간부를 상대로 노동자의 요구를 해결하고 그들을 조직화하며 교육하는 것이 당면한 3대 공작이라면서, 노동자들은 중국공산당이 반혁명을 낚낚이 조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劉少奇의 발언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중국공산당은 工會를 통해 ‘반혁명 세력’ 색출이라는 정치적 운동에 노동자들을 동원하였다.⁴¹⁾

이후 1949년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국공회공작회의가 열렸을 때 「노자관계 임시처리방법」이 통과되었고, 주요 내용은 사영기업의 노동자와 자본가 양측 간 단체협약 [集體合同]의 체결을 통해 노자분규를 해결 한다는 것으로,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근로 시간을 규정한 것이었다.⁴²⁾

중국공산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악패로 지칭되던 이들의 일상에 제동을 거는 것이었다. 그들이 느낀 당혹감, 위기의식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11월, 北平의 채소업 노동자와 자본가(중매업) 양측은 인민정부 노동국의 주도 아래 노사협의를 체결하였다. 협의의 규정은 기존의 자본가 측의 몫인 80% 가운데 노동자에게 53.5%를 주고 자본가측은 26.5%만 가지는 것이었다. 이

40) 「中央工委關於召開全國各解放區工人代表大的意見」(1948.3.5), 中央檔案館 編, 『中共中央文件選集』 第17冊, 74-76쪽; 「劉奇關於北平接管工作中一些問題的報告要點」(1949.4.3.), 中共北京委黨史研究室 編, 『北平的和平接管』, 北京出版社, 1993. 125쪽; 이원준, 앞의 논문, 237-238쪽.

41) 「劉奇關於北平接管工作中一些問題的報告要點」(1949.4.3.), 『北平的和平接管』, 130쪽; 이원준, 앞의 논문, 241쪽.

42) 「中央關於貫徹全國工會工作會議精神加強工會工作的指示」(1949.8.26.) 『中共中央文件選集』 第18冊, 433-434쪽.

것은 결론적으로 채소업에 공산당이 개입하면서 원래 자본가 층의 수익이 이전보다 1/3로 삭감되어 26.5%로 변동되고 그 나머지 비율은 노동자에게 배당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협의가 체결된 후 채소업 악패로 불리던 黃蘭田은 실제로는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고 노동자들에게 협의의 내용보다 10% 적은 43.5%만 주려고 하였다. 또한 그는 노동자들을 선동하여 工會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중국공산당의 工會 대신에 자신들의 ‘工商聯’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였으며 비밀리에 폭력배를 모아 工會에 가입한 노동자들을 폭행하였다. 건설업의 악패로 지칭되던 支振彬 역시 노동자들은 도처에 많이 있다면서 工會에 가입하는 자는 해고하겠다고 위협하였다.⁴³⁾ 악패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것에 대해 그들이 느낀 위기의식의 반영으로 보인다.

이 당시 중공중앙에 의해 반혁명으로 지목된 자들은 이들만이 아니었다. 중공중앙은 국민당 정부에 밀착하여 그들의 정책에 반대하는 행보를 걷던 北平 최대의 會道門⁴⁴⁾인 일관도 역시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중국공산당의 시도가 시작되었을 때 신도 세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책에 지속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회도문이 주창하는 신앙과 풍속은 민중에게 공동체 의식과 귀속감을 갖게 했으며, 현실세계에서 출로를 찾지 못하던 농민들은 천국을 선전하는 회도문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회도문은 전술한 청방·홍방과 함께 중국의 비밀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로 지목된다.⁴⁵⁾

그러나 비밀사회의 이러한 고유의 기능에도 불구하고 중국공산당의 입장에서 문제는 국민당이 이들 비밀사회를 이용하여 중국공산당에 대항하는데

43) 韓晉昆, 「解放初期反行業惡霸的鬭爭」, 『蕩滌污垢』, 161쪽.

44) 일반적으로 老母會, 九仙會, 黃帶會, 順天會, 觀音會, 九宮道, 跪鄉道, 廟道, 張生道, 大宣門, 大乘門, 小黃門, 天直門, 混元門, 老天門 등 조직의 명칭 중 마지막에 ‘會’, ‘道’, ‘門’이 들어가는 것을 통칭하여 ‘회도문’이라고 한다. 趙嘉朱, 「綜論會道門的流傳演變與活動特点」, 『北京檔案史料』, 2005. 148쪽.

45) 邵離, 앞의 책, 527쪽.

있었다.⁴⁶⁾ 특히 민간 비밀조직 ‘白蓮教’를 전신으로 하는 일관도의 경우 회도문 중에서도 가장 막대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북경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중국공산당이 파악하기에 일관도의 지도자 중 대다수는 항일전쟁 시기에 汪精衛 정권에서 직무를 맡았고, 일본의 투항 이후에는 국민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1947년 北平의 국민당 특무 기관은 일관도의 大壇主 이상 및 회도문의 頭子들을 소집하여 地壇 부근에서 한 달 동안 합동 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었으며, 北平의 道長 張五福은 남경국민정부 시기에 北平 헌병대 고문에 임명되었으며 일본의 투항 후에는 국민당 聯保주임을 맡아 중국공산당 통치 지역의 일관도 신도가 중국공산당의 정보를 국민당 군대에 제공하도록 하는데 동의하였다.⁴⁷⁾

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의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세력이었다. 1946년에 일관도는 전성기를 맞았는데 이 때 중간급 이상의 壇(법당)이 1,360개였고 각 가정에 만들어 놓은 단은 셀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이 당시 北平에서 일관도의 신도 역시 20여만 명⁴⁸⁾에 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신도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공산당에 반대하는 행동을 일삼던 일관도를 분쇄하지 않고서는 중국공산당이 北平의 주민을 장악하기란 어려운 일었을 것으로 보인다.

46) 국민당이 비밀사회를 이용하여 중국공산당에 대항했다는 주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연구를 참고. 譚松林 主編, 『中國秘密社會』 第6, 7卷, 福建人民出版社, 2002; 孔樣濤·劉平 主編, 『我看中國秘密社會』, 廣西人民出版社, 2002; 周建超, 『秘密社會與中國民主革命』, 福建人民出版社, 2002. 그 밖에 비밀사회 혹은 비밀결사에 대한 국내의 연구로는 다음이 있다. 박상수, 『중국혁명과 비밀결사』, 서울: 심산, 2006; 손승희, 『근대 중국의 토비 세계』, 과주: 창비, 2008. 또한, 道院과 紅卍字會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다음이 있다. 유장근,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직후 상하이 지역 홍만자회의 신국가체제 적응문제」, 『중국근현대사연구』 66, 2015; 채준형, 「종교, 국가, 그리고 지역주민」, 『동양사학연구』 137, 2016. 그리고 일관도의 역사적 발전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다음의 논문이 있다. 채준형, 「근대 중국 신종교의 발전: 일관도를 중심으로」, 『사총』 88, 2016.

47) 李萬啓, 「北京取締‘一貫道」」, 『蕩滌污垢』, 176-179쪽; 海澱區公安分局黨史公安史辦公室, 「海澱地區取締反動會道門一貫道」,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北京市海澱區委員會文史資料委員會, 『海澱文史選編』 第7輯, 1993. 74-75쪽.

48) 李萬啓, 「北京取締‘一貫道」」, 『蕩滌污垢』, 175쪽.

이러한 정황 속에서 회도문과 일관도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대응은 이들에 대한 해산과 금지로 이어졌다. 北平의 접관이 임박했던 1949년 1월 4일에 「북경시 일관도 처리 계획」(초안)⁴⁹⁾이 결정되었고, 같은 날 華北人民政府는 「모든 회문·도문의 봉건미신조직을 해산시키는 포고」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비밀 결사와 미신적인 종파(회도문)는 봉건적이며, 종종 반동주의자들에 의해 다양한 반혁명 활동을 수행하도록 조종되었다면서, 중일전쟁과 현재의 국공내전 기간 동안 그들은 간첩 역할을 하거나, 유언비어를 퍼트리거나, 사람들을 호도하여 사회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의 해를 끼쳤기 때문에 금일부터 모든 비밀결사와 미신적인 종파를 해산하고 향후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⁵⁰⁾

일관도에 대한 華北人民政府의 공식적인 금지 조치에 이어 3월에 西郊 公安局은 일관도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에 착수하였다. 당시는 이미 保甲제도가 와해되고 街鄉人民政權이 설립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각 가정에 조사원이 방문하여 파악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에 따라 1949년 말부터 1950년 상반기까지 海淀 지구에서 파출소의 民警과 街鄉 간부가 각 가정을 방문 조사할 때 일관도 신도를 찾아내는 일이 가능했고, 신도에게 公安局에 가서 일관도 조직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신도들은 일관도 道首들의 악행을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누가 中小道首이고 어느 집에 불상이 놓인 적이 있었는지를 밀고하였고 일관도의 조직 체계에 대해 공산당원에게 진술하였다. 특히 중국공산당으로부터 토지를 분배 받은 신도는 자발적으로 일관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였다.⁵¹⁾

49) ① 点傳師 이상의 중요한 분자 및 기타 정치과괴행위를 한 자는 체포하여 법에 따라 처리한다. ② 点傳師 이하 壇主이상은 등록을 강제로 명령하고 선별하여 관제, 감시 개조를 실행한다. ③ 일반적인 신도가 탈퇴를 호소하고 조직을 탈퇴하거나 활동을 정지한 자는 처벌을 면해준다. 李萬啓, 「北京取締‘一貫道」, 『蕩滌污垢』, 189쪽.

50) Chang-tai Hung(洪長泰), “The Anti-Unity Sect Campaign and Mass Mobilization in the Early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China Quarterly, Vol. 202, June 2010, p.400.

51) 海淀區公安局黨史公安史辦公室, 「海淀地區取締反動會道門一貫道」, 앞의 책, 78쪽.

이상과 같은 새로운 사회의 도래에 대한 다양한 세력의 반혁명적 저항과 그것에 대한 진압은 1949년 10월 1일에 중국공산당이 국민당과의 내전을 끝내고 정권 교체에 성공하여 정식으로 국가 전역의 집권당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구체화되었다.

II. 반혁명 진압 정책의 구체화

중화인민공화국이 정식으로 출범하기 직전인 9월 21일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계 전체회의가 북경 자금성 내의 懷仁堂에서 개막되었다. 출석한 인원은 모두 662명으로 중국공산당은 회의의 최대 당파였고 그 밖에 郭沫若을 수석 대표로 하는 無黨派 민주인사와 中國國民黨革命委員會, 中國民主同盟, 民主建國會, 中國民主促進會, 中國農工民主黨, 中國人民救國會, 三民主義同志聯合會, 中國國民黨民主促進會, 中國致公黨, 九三學社, 臺灣民主自治同盟을 포함한 총 11개 민주당파가 이 회의에 참석하였다.⁵²⁾

이 회의에서 발표된 임시 헌법 성격의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共同綱領」(이하 「共同綱領」으로 약칭) 역시 당시의 과제를 반영하듯 반혁명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었다. 제7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은 반드시 모든 반혁명 활동을 진압해야 하고 제국주의와 결탁하여 조국을 배반한 모든 국민당 반혁명 전쟁 범죄자와 회개하지 않는 기타 반혁명 수괴를 엄중하게 처벌한다. … 그러나 동시에 그들에게 활로를 열어 주고 그들이 노동을 하면서 자신을 개조하여 새로운 인간이 되도록 한다.”⁵³⁾고 규정하였다.

이어서 전국공안고급간부회의(제1차 전국공안회의)가 10월 15일에서 11월

52) 龐松, 『中華人民共和國史 1949-1956』, 北京: 人民出版社, 2010. 8-9쪽.

53)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共同綱領」(1949.9.27.),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1949-1950),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1. 3쪽.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을 때 재정·경제는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이었다. 국민당은 새로운 정부가 국민의 식생활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며 인플레이션을 해결하지 못하고 공산당과 함께 퇴진할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1949년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 총 생산액은 557억 원, 그 중 공업 총 생산액은 140억 원으로 중일전쟁 전의 1936년과 비교하여 50.1% 하강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실업노동자 수는 400만 명에 달했는데 이 수는 전국 노동자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였다. 또한 약 6천만 명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도시의 상황은 굶주림과 영양실조가 만연했고, 원자재의 부족으로 많은 공장이 문을 닫았던 상황이었다. 李德彬, 양필승·윤정분 옮김, 『중화인민공화국경제사』 1, 서울: 교보문고, 1989. 129쪽; 龐松, 위의 책, 38쪽; 中共中央黨史研究室編, 『中國共產黨的九十年』 第2冊, 38-39쪽; Carl Riskin, *China's Political Economy*, Oxford University, 1987. p.42

1일까지 수도 북경에서 개최되었을 때 市公安局 부장 羅瑞卿 역시 반혁명을 진압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수도 公安局의 전체 임무로 설정하였다.⁵⁴⁾

그러나 이러한 중국공산당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반혁명 세력의 저항 역시 더욱 거세졌다. 국민당의 특무 조직들은 毛澤東의 암살을 기도했고 廣東軍區司令員인 葉劍英의 전용 열차에 테러를 감행하였다. 국가 주석인 毛澤東이 스탈린의 70세 생일을 기념하고 외교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련을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12월이 되기 한 달 전, 인민해방군 대방첩기관(反特) 감청대는 毛澤東이 소련을 방문하고 귀국하는 1950년 2월 17일에 맞춰 그를 암살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전보를 포착하였다. '0409'라는 암호가 담긴 이 전보는 북경의 모 국민당 특무 잠복대가 대만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중간에 탐지된 것이었다.⁵⁵⁾ 두 달 후에는 武東정류장 인근 기차길에 많은 돌덩이들이 놓여 있는 바람에 74호 기차가 탈선하였는데 그 기차는 葉劍英의 전용 기차였다. 중공중앙은 이 소식을 각 中央局과 分局에 전달하면서 특무의 파괴 활동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⁵⁶⁾

또한 중공중앙이 1월 24일에 「각급 인민정부내 토지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각급에 農協을 조직하여 토지개혁운동을 직접 지도하도록 하는 지시」를 발표하면서 새롭게 통치권을 획득한 지역인 新解放區에서 토지개혁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자, 북경의 일관도 師母 孫素珍은 이것에 대항하며 신도들이 農會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일부 壇主들은 신도에게 중국공산당으로부터 분배받은 토지를 돌려주도록 강요하였고, 팔로군이 나중에 곡식을 거두어 갈 것이므로 농사짓는 것은 막연한 낭비이며 가을이 지나고 2차 토지

54) 「組織隊伍，建立新中國的公安工作」(1949.11.1.)，公安部<羅瑞卿論人民公安工作>編輯組 編，『羅瑞卿論人民公安工作』，北京：群衆出版社，1994. 10-12쪽.

55) 董成家，「刺殺毛澤東案偵破始末」，『世紀橋』2010-22. 58-59쪽.

56) 「中央關於警惕特務破壞鐵路的電報」(1950.2.10.)，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建國以來劉少奇文稿』(1949.7-1950.3)，北京：中央文獻出版社，1998. 409쪽.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퍼트렸다. 일관도 지도자들의 이러한 유언비어의 날조와 유포는 실제 북경 지역 농민의 정상적인 생산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동이었다.⁵⁷⁾

이러한 일련의 상황 속에서 3월 18일, 중공중앙의 명의로 「반혁명 활동 진압에 관한 지시」가 내려졌다. 중국공산당이 집권당이 된 후 반혁명 활동에 대한 진압 의지를 선포한 첫 공식적인 조치였다.

무기를 소지한 채 대중을 모아 폭동을 일으키고, 공공기관과 간부를 공격하고, 물자를 약탈하는 강도 무리는 반드시 결연하게 진압해야 하며 …… 반혁명 활동을 진행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자는 극형 혹은 장기징역에 처한다. 반혁명을 목적으로 우리 간부를 살해하고, 공장·창고·철로·기선 및 기타 공공기물을 파괴한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한다. 반혁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기타 목적을 위하여 예를 들어 개인적인 원한으로 살해하고 공공기물을 절도한 행위 역시 반드시 형벌에 처해야 하지만 반혁명 행위와는 구분해야 한다. …… 사형 및 장기 징역은 법원의 판결을 거쳐야 하며 판결 후 省政府 주석 혹은 省政府가 전문 위원 혹은 기타 책임자에게 위탁하여 批准을 거친 후 형을 집행한다. …… 반혁명분자의 폭동과 파괴 행위를 엄중하게 진압하고, 중범 및 범행이 중하지 않은 자는 관대하게 처리 한다. 그들을 개조시킴으로써 인민 혁명의 질서를 견고히 할 수 있다.⁵⁸⁾

「공동강령」과 이 3·18 반혁명 지시에는 공통적으로 반혁명을 철저히 진압하겠다는 중국공산당의 강한 의지가 드러나 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혁명을 대하는 중국공산당의 입장에 강압과 관용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동강령」에서는 반혁명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예고하면서도 그들에게 생활해 나갈 수 있는 활로를 열어주려 하였고, 범인에게 반드시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개조를 통하여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하였다. 그리고 3월 18일의 지시는 반혁명 행위에 대하여 正犯과 중범을 구분함으로써 처벌의 수위에 차이를 두었으며, 중범 및 범행이 중하지 않은 자는 관대히 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57) 孫惠強, 「1950, 北京鏟除一貫道邪教」, 『檔案春秋』 2009-9. 14-15쪽.

58) 「中共中央關於鎮壓反革命活動的指示」(1950.3.18.),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1949-1950), 141-143쪽.

이러한 강압적인 진압과 관용적인 처벌 정책의 병립은 중국공산당이 항일 전쟁 초기에 취했던 입장으로, 漢奸犯과 특무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책 행위를 엄밀히 판단하지 않았을 때 발생했던 ‘좌’편향적 풍조, 즉 과도하고 지나친 처벌의 경험에서 시작된 것⁵⁹⁾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공산당이 반혁명 진압 과정 내내 항상 스스로에게 상기하는 하나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좌파주의적 과도함으로 반혁명 세력을 진압한다면 일반 대중은 중국공산당을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하는 집단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은 줄곧 대중과 함께 하는 대중 노선을 걸으려 했던 중국공산당의 원칙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었다. 대중의 이러한 움직임이 중국공산당에 대한 불필요한 동요로 이어질 위험성에 대해 중국공산당은 우려하고 있었다.⁶⁰⁾

이러한 이유에서 3·18 「반혁명 활동 진압에 관한 지시」의 발표 후인 3월 21일에 열린 제1차 통일전선 공작회의에서 中共中央統一戰線 부장 李維漢은 인민민주통일전선의 새로운 임무로 노동자-농민 연맹의 기초를 견고히 하고 민주계급과 민주당파, 인민단체, 화교, 각계 민주인사의 단결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⁶¹⁾

그러나 당시 北京市委의 서기이자 政務院 政法委員會의 부주임이던 彭眞은 이러한 분위기를 한없이 관대한 상황으로 판단했고 5월 8일에 이것에 대

59) 張希坡 編, 『中華人民共和國刑法史』, 北京: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1998. 104-105쪽.

60) 이러한 우려는 1950년 5월 5일 중공중앙이 華東局에 전달한 반혁명 폭동 진압 및 대중성의 소요사건 처리에 관한 지시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당시 기근이 심각하여 추수 후 정부가 농민에게 징수한 현물 농업세의 부담이 과중하여 농민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반혁명 세력이 이들을 선동하여 식량을 약탈하는 사건들이 발생했다. 毛澤東은 현장에 있는 무장부대가 그들의 행위가 위법임을 이해시키는데 실패한다면 공중을 향해 발포하여 그들을 흩어지게 하라고 요청하였다. “절대 대중을 향해 발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毛澤東의 주문이었다(『在中央轉發的華東局關於鎮壓反革命暴動及處理群眾性騷動事件的指示中加寫的活』(1950.5.5.), 『毛澤東文稿』(1949.9-1950.12), 324쪽). 또한, 북경 지역은 아니지만 중공중앙 西南局 선전부는 1950년 12월 15일 중경의 『新華日報』가 악패 청산 등을 보도한 내용을 보고 “닥치는 대로 경중도 구분하지 않고 쓸데없이 장황한 문장들로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 주의하라.”고 지시하였다(『中宣部傳撥西南局宣傳部關於清匪反霸報道問題的意見的批語』(1950.12.19.), 위의 책, 730쪽).

61) 馬文彬·高狄·王茂林·王瑞璞 主編, 『中國共產黨建設全書(1921-1991)』 第6卷(黨的領導工作), 山西人民出版社, 1991. 1089쪽.

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는 당의 간부와 대중을 살해한 많은 반혁명범들이 사형 선고를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하급 법원이 사형 선고를 내린 것에 대하여 상급심에서 징역형으로 바꾼 사실, 그리고 전국에 반혁명과 관련된 많은 사건이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상당하고, 심지어 “국민당은 법은 있고 하늘은 없었지만, 공산당은 하늘은 있고 법은 없다.”는 말이 돌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나타내었다.⁶²⁾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彭眞의 지적이 있는 후 전국정치협상회의 1계 2차 회의가 북경에서 개막한 6월 14일, 오후 5시에 朝外大街 17호 208師 輔華舍 記鑛山の 화약공장이 폭발하여 39명이 사망하고 406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대만 당국은 보도를 통해 테러의 배후를 자처했고, 중국 내에서는 국민당 특무가 전투기로 동쪽 근교를 폭격한 것이라는 내용이 퍼지면서 불안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었다.⁶³⁾

여기에 6월 25일, 북한의 인민군이 38선을 넘어 남침하면서 한국전쟁이 시작되자 상황은 더욱 급박하게 전개되었다. 당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의 사회주의 진영이 서로 대치하던 상황이었다. 북한의 침공이 있자 곧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북한의 침공을 비난했고 며칠 뒤 미국대통령 트루먼(Harry S. Truman, 1884-1972)은 중국공산당의 대만 점령을 무력으로 저지하겠다고 선포한 후 미국 제7함선을 대만 해안으로 출동시켰다.⁶⁴⁾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자 국민당의 특무 요원들은 홍콩을 통해 중국으로 잠입하였고, 일관도의 지도자들 역시 제3차 세계대전이 임박했다는 유언비어를 날조하며 이제 미국과 장개석 군이 북경에 들어오면 八路軍은 끝날 것

62) 『對反革命分子 ‘寬大無邊’의偏向必須糾正』(1950.5.8.), 彭眞, 『論新中國的政法工作(彭眞)』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2. 7-8쪽.

63) 劉光人·趙益民·於行前 主編, 『京都公安局長: 馮基平傳』, 北京: 群衆出版社, 1997. 177-180쪽.

64) Frank Dikotter, 고기탁 옮김, 『해방의 비극: 중국 혁명의 역사 1945-1957』, 과주: 열린책들, 2016. 144쪽.

이라는 말을 퍼트렸다. 또한 신도들에게 공산당에 항거하라는 내용의 전단지
를 공공연하게 배포하였고, 일부 지도자는 신도들을 조직하여 군사 훈련
을 시켰으며, 총과 칼 등 무기를 구입해 놓고 오직 상부의 명령만을 기다리
며 다시 재개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⁶⁵⁾

7월 6일부터 8월 12일까지 개최된 公安部의 제1차 전국 치안행정업무회의
에서도 도시 치안행정의 첫 번째 기본 임무를 정부의 정책과 법령에 따라
반혁명 파괴 활동을 진압하고 방지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⁶⁶⁾

체제를 안정시키려는 중국공산당에 저항하는 이러한 반혁명적 행동의 강
화는 간과할 수 없는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것은 중국공산당 내부에
서 반혁명 진압에 관한 사법 처리의 강화로 이어졌다. 7월 14일자 政務院
제41차 정무회의에서 통과된 「인민법원조직통칙」에는 最高人民法院은 지난
1949년 10월 22일에 설립되었으나 縣(市) 단위에도 인민법원의 설립이 필요
하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새롭게 설립되는 인민법원이 인민민주독재 정
치를 견고히 하고 사회 치안을 파괴하는 반혁명 세력 및 토지개혁법령에 저
항하는 범죄를 처벌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
고 있다.⁶⁷⁾

이어서 7월 23일, 政務院 총리 周恩來와 最高人民法院 원장 沈鈞儒의 명
의로 「반혁명 활동 진압에 관한 지시」가 발표되었다. 두 번째 진압 지시였
다. 3월 18일자 지시와 비교하여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은 다음의 내용이었
다.

반혁명을 목적으로 …… 국가 기밀을 유출하고 낙후한 인민을 선동하여 인민정
부의 모든 활동에 반대하도록 하는 자들 …… 모두 법에 따라 사형 혹은 장기징

65) 孫惠強, 앞의 논문, 15쪽.

66) 中央人民政府政務院秘書廳印, 『中央人民政府政務院政務會議文件彙輯』第3冊, 1953. 152-153쪽.

67) 周振想·邵景春 主編, 『新中國法制建設四十年要覽(1949-1988)』, 北京: 群衆出版社, 1990. 22-23쪽.

역에 처한다. …… 상술한 주요 반혁명분자 중 사형을 선고받은 자는 모두 상소할 수 없다. 상술한 각 반혁명분자를 처리함에 있어 증거와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고문에 의한 강제 자백을 금지한다. 반혁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亂打·亂殺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제지시키고 법에 따라 처리한다.⁶⁸⁾

7·23 반혁명 진압 지시는 3·18 지시처럼 중국공산당의 체제 안정에 위협이 되는 요소인 반혁명 세력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은 같지만, 공포한 부처가 사법기관이라는 특성답게 반혁명범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법적 제재를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사형을 선고 받은 반혁명범에게 상소할 기회를 박탈한 것은 선고된 사형 판결이 오심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한 것으로 상급법원의 심판을 통한 구제의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었다.⁶⁹⁾ 그러나 증거를 중시하고 고문에 의한 강제 자백을 금지하며 亂打·亂殺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지한 후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적시한 부분은 실제 이행되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반혁명 진압에 대한 중공중앙의 공식적인 지시에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신중함이 묻어있는 반혁명 진압에 대한 비판은 7월 26일에 개최된 司法部·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警察署·司法委員會 제1계 전국사법회의에서 또다시 이어졌다. 이 회의의 참석자들은 사법 업무의 현재 임무는 주로 반혁명 활동의 진압과 국가 경제의 건설 및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인민 내부의 분규를 조절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면서 반혁명 진압에 있어 공산당원이 “악의 수괴는 반드시 처벌하고, 협박에 못 이겨 추종한 중범은 죄를 묻지 않고, 공을 세운 자는

68) 「政務院、最高人民法院關於鎮壓反革命活動的指示」(1950.7.23.),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1949-1950), 358-360쪽.

69) 華北人民政府의 사법 판결은 3심 판결제도였다. 1948년 10월 23일에 발표된 「華北人民政府通令」에는 “縣級 사법기관은 1심 재판기관이고, 行署區人民法院이 2심 재판기관, 華北人民法院이 결심기관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각 직할시인민법원이 심사하는 안건은 원칙상 2심에서 종결되었다. 만약 3심을 요구할 때는 華北人民政府 주석이 특별법정을 조성하거나 華北人民法院이 재심하여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다. 王娜, 「華北人民政府時期司法制度的文本研究」, 孫琬鍾 主編, 앞의 책, 214쪽.

포상한다.”는 중공중앙의 기본 방침에 너무 집중하여 형사 처분과 교육을 통한 개조의 결합이 아닌, 교육을 통한 개조만이 일방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⁷⁰⁾

여기에 첫 건국기념일을 불과 며칠 앞둔 9월 26일에는 기념일에 천안문 성루에서 연설할 毛澤東 및 여러 국가 지도자를 박격포로 포격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설계도가 公安局에 의해 발견되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반혁명을 강압적으로 진압해야 하는 입장과 관용적인 처벌 사이에서 나름대로 균형을 지키려고 했던 毛澤東과 주요 정책 결정자들은 곤란한 입장에 놓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딜레마는 10월을 전후하여 한국전쟁의 기세가 자신이 타도해야 할 자본주의국인 미국 측으로 기우는 것을 목도하면서 곧 해결되었다. 더글라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1880-1964) 장군이 이끄는 유엔군의 반격으로 북한군은 중화인민공화국 창립 1주년 기념일인 10월 1일에 38선 이북으로 퇴각하였다. 이에 10월 8일, 毛澤東은 중국인민혁명군사위원회 주석의 신분으로 중국인민지원군의 결성을 명령하고 동북변방군을 중국인민지원군으로 바꾸어 즉시 한국으로 파병시켰다. 한국전쟁은 중국공산당 정권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규합하고 毛澤東이 설정한 적을 거세게 밀어붙일 단초를 제공하였다.⁷¹⁾

이후 1951년 2월 26일에 중공중앙 華南地區가 향후 반혁명 진압에 관한 계획을 중공중앙에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보고서에는 “한국전쟁과 토지개혁, 이 두 가지 고조된 유리한 시기를 이용하여 대담하고 결연하게 반혁명 분자를 공격한다.”는 의견이 진술되어 있다.⁷²⁾ 또한

70) 「司法部關於制一屆全國司法會議的綜合報告」(1950.8.25.), 『中華人民共和國司法行政歷史文件匯編(1950-1985)』, 3-4쪽.

71) 「軍委主席毛澤東關於組成中國人民志願的命令(1950.10.8.)」,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1949-1950), 418-419쪽; Frank Dikotter, 앞의 책, 144쪽.

72) 「中央同意華南分局鎮壓反革命計劃的電報」(1951.3.4.),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建國以來劉少奇文稿』(1951.1-1951.12), 中央文獻出版社, 2005. 133쪽.

5월에 열린 제1차 선전공작회의에서 毛澤東은 이전에는 그들의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자본가 계급과의 관계도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상황이 바뀌었다면서, 경제문제도 기본적으로 해결되었고 한국전쟁이 시작 되었으므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기회는 다시 마주하기 어려우니 이 기회를 잘 이용해야 한다면서, 단지 몇몇의 반혁명분자를 죽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대중을 발동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었다.⁷³⁾ 같은 회의에서 劉少奇 역시 한국전쟁의 소리가 너무 커서 토지개혁과 반혁명 진압의 소리가 그다지 크지 않게 들렸다면서 만약 한국전쟁의 소리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다면 토지개혁의 과정에서 지주를 죽이는 소리, 반혁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나는 소리들이 도처에서 시끄러웠을 것이고 사정이 불리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⁷⁴⁾

중국인민지원군의 한국 파병이 결정되고 이틀 후인 1950년 10월 10일에 세 번째 「반혁명 활동 진압에 관한 지시」(10·10지시)가 중공중앙 명의로 발표되었다. 반혁명 진압에 있어 강경 노선을 건졌다는 입장의 표명이었다.

이러한 우편향적 태도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 반혁명분자에 대한 형 집행은 반드시 **그 판결을 공포하고 신문에 보도하여 대중에게 광범위한 선전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 현재 **법원 업무는 반드시 반혁명 안전의 처리에 중점을** 뒤야 한다. 반혁명 활동 중 좌편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급 黨委는 반드시 강요된 자백을 죄를 판가름하는 근거로 삼는 것을 반대해야 하고, 육형을 금지하고, 자백만을 믿어서는 안 된다. …… 반혁명 활동을 진압하는 업무 상황에 대하여 **각 中央局은 반드시 1개월 내, 즉 11월 10일 이전까지 그 내용에 대한 1차 보고를** 진행하고, 그 후에 중앙방침의 계획을 정하여 중앙에 전보로 통지하여 비준을 받고 그에 따라 실행한다. …… 각 中央局 소속의 分局, 省委, 大市委, 區黨委는 자기 구역에서 집행하는 반혁명 진압 활동에 대한 업무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반드시 40일 내에 즉 11월 20일 이전까지 각 중앙국에 1차 보고를 해야 한다. 각 中央局 및 分局, 省委, 大市委, 區黨委는 이후로 모두 黨委 서기가 책임지고 중앙 및 중앙국에게 **매4개월마다 반혁명 진압 문제를 전문적인 주제**

73) 楊奎松, 『中華人民共和國建國史研究』, 南昌: 江西人民出版社, 2009. 184쪽.

74) 楊奎松, 위의 책, 184쪽.

로 삼아 보고한다.⁷⁵⁾

이 지시가 반혁명 활동을 철저히 진압하겠다는 취지에서 발표되었다는 사실은 이전의 '3·18지시', '7·23지시'와 다를 바 없지만, 그 서두에서 그간의 진압이 내포하고 있던 지나친 관대함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과 반혁명범에 대한 판결을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한 부분, 그리고 향후 각 市委에게 매 4개월마다 반혁명 진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및 처리한 정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한 부분은 앞선 두 지시와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다. 특히 반혁명범에 대한 판결을 신문에 공개하여 그것으로 인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중국공산당의 혁명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소거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권력을 과시하려는 것이며, 반혁명적 행동을 할 경우 받을 강력한 처벌에 대해 공포심을 유발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 따라서 여전히 좌편향적 착오의 발생을 경계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국전쟁 발발 이후 전반적으로 반혁명 진압에 대한 자세가 확실히 강경해진 것을 알 수 있다.

10월 10일의 반혁명 진압 발표 이후 각 부처 간 회의가 개최되었다. 전반적으로 毛澤東의 지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公安部가 개최하는 전국고급간부회의(제2차 공안회의)가 1년 만인 10월 16일에 다시 열렸을 때도 10·10지시에서 제시된 문제들에 대한 토론이 주를 이루었고, 회의는 이들 문제에 대한 수정에서부터 발전되어 나갔다.⁷⁶⁾

한편, 이 회의에서 彭眞은 회도문의 문제를 공식화하였다. 회의의 마지막 날인 10월 21일, 그는 국민당이 대중의 미신사상인 회도문 형식을 이용하여 대중에게 접근하였다는 점과 특무 요원 역시 회도문을 이용하여 각종 파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회도문이 이미 반혁명세력의 주요 무

75) 『中共中央關於鎮壓反革命活動的指示』(1950.10.10.),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1949-1950), 420-423쪽.

76) 『中共中央批轉中央公安部〈關於全國公安會議的報告〉』(1950.10.28.),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1949-1950), 443-445쪽.

기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회도문의 금지를 선포하고 대중에게 그것이 불법임을 알게 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⁷⁷⁾ 北京市委 역시 11월 19일자로 제출한 「현재 반혁명 진압 업무 상황과 향후 계획」에서 일관도를 북경 최대의 반동조직이라고 규정하였고, 그들이 반동적 표어와 반동적 문건을 배포하면서 특무 조직을 엄호하고 있는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일관도가 위법이라는 것을 선포하여 이 조직의 해산을 엄중히 명령하겠다는 향후 계획도 함께 담았다.⁷⁸⁾

당시 북경에 존재하는 일관도 조직은 點傳師 이상이 454명, 分壇 이상의 壇主는 1090명, 三才 80명, 신도는 약 10만 명⁷⁹⁾으로 간과할 수 없는 숫자였다. 이들 일관도의 지도자를 체포하는 일은 일관도를 금지시키는 포고문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하루 전에 기습적으로 진행되었고, 張五福, 孫素珍 등 주요 인물이 사전에 소식을 듣고 도주한 것을 제외하고 북경의 주요 道首 130여명이 일거에 체포되었다.⁸⁰⁾ 그리고 다음날인 12월 19일에 毛澤東은 반혁명 진압은 질서 있게, 정확하게 착오가 없으면서도 엄중하게 하라는 穩, 准, 狠의 태도를 제시하였고⁸¹⁾, 그 날 북경시의 크고 작은 거리마다 금일부터 회도문은 즉시 해산하며 일관도의 신도들은 즉시 탈퇴하라는 내용이 담긴 「북경시인민정부포고」가 붙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일관도는 반혁명·반인민적인 봉건미신조직으로 반동 수괴의 조종 아래 미국·장개석의 특무·한간과 결탁하여 인민에 해를 끼치는 범죄 활동을 하였고, 무지하고 낙후한 대중을 꺾박하고 기만하여 많은 인민이 가산을 탕진했다. 여신도 중 상당수가 강간을 당했고 심지어 매춘을 강요받기도 하였다. 일부 신도는 부당한 형벌이나 고문을 받았고 심지어 살해되었다. 이 때문에 華北人民政

77) 「在第二次全國公安會議上的講話」(1950.10.21.), 『論新中國的政法工作(彭眞)』, 9-12쪽.

78) 「中共北京市委關於鎮壓反革命活動的工作情況及今後計劃致中央華北局的請示報告」(1950.11.19.), 北京市檔案管編, 『國民經濟恢復時期的北京』, 北京出版社, 1995. 142-145쪽.

79) 「中共北京市委關於逮捕一貫道首要分子向中央、華北局的報告」(1950.12.3.), 『選編』(1950), 530쪽.

80) 李萬啓, 「北京取締‘一貫道’」, 『蕩滌污垢』, 190-191쪽.

81) 「毛澤東關於鎮壓反革命分子的策略問題的電報」(1950.12.19.),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1949-1950), 509쪽.

府는 1949년 1월, 이것을 불법조직으로 선포하고 금지시켰으나 계속해서 이들은 특무·간첩의 역할을 담당했고 유언비어를 퍼트렸다. 이에 …… 포고일부터 모든 회도문은 즉시 해산하고 어떠한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 …… 사기와 협박에 의해 가입한 일관도 신도들은 그 조직을 탈퇴하고 활동을 중지한다면 더 이상 추궁하지 않는다.⁸²⁾

포고문을 발표한 이후 중공중앙이 취한 방법은 주로 신문과 라디오를 이용한 여론 공세와 규탄대회를 개최하여 일관도의 죄를 폭로하고 규탄하는 것과 그들의 반혁명적 행위에 관한 증거품을 전시하는 전시회의 개최, 그리고 신도를 동원하여 그들이 강점한 피해금의 반환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 등이었다. 그러나 등록해야 하는 일관도의 지도자 대부분이 여전히 중국공산당에 적대적인 입장을 표출하였고, 등록된 자 중 일부는 일관도 조직 관계에 관한 문서와 신도로부터 받은 공덕비 장부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동은 ‘마귀의 시험에 대응하는 19조’에 적혀있는 그들 내부의 지시와 일치하는 것이었다.⁸³⁾

82) 『北京市人民政府關於取締一貫道組織的布告』(1950.12.19.), 『選編』(1950), 540-541쪽.

83) 李萬啓, 『北京取締‘一貫道’』, 『蕩滌污垢』, 192-194쪽.

Ⅲ. 반혁명 진압의 사회운동으로 전화

반혁명에 대한 철저한 진압을 목표로 했던 ‘10·10지시’가 반혁명 사건에 대한 사법 처리의 지연에 따른 미해결 사건이 산적해 있는 상황을 지적하자, 지시를 실천해야 하는 기관인 政務院과 最高人民法院은 반혁명범에 대한 사법 처리를 더욱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政務院과 最高人民法院이 1950년 10월 13일에 발표한 「인민사법기관이 신속하게 미해결 사건을 정리하는 것에 관한 지시」를 살펴보면, 각지에서 사건을 방치해두는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여 일부 반혁명분자 및 기타 범죄자에게 법의 적용이 유효하지 않게 되는 사실이 지적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사법기관의 업무를 소극적이고 피동적으로 만들며, 소송당사자에게는 소송의 지연을 초래하고 결국 혁명질서를 건립하고 견고히 하는 것에도 영향을 준다면, 각급 인민정부 및 인민사법기관은 반드시 미해결 사건의 현황을 분석하여 일정 기한 내에 그것들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시하였다.⁸⁴⁾ 이와 관련하여 政務院 총리 周恩來도 11월 3일에 「인민사법공작 강화에 관한 지시」를 통해 현재 사법 업무에 주어진 주요 임무는 반동을 진압하고 인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⁸⁵⁾ 이렇듯 10·10지시가 반혁명 사건에 대한 사법 처리의 지연에 따른 미해결 사건이 산적해있음을 지적하자 政務院과 最高人民法院은 반혁명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와 관련된 장기 미해결 사건의 신속한 정리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반혁명 범죄 혐의자에 대한 사법 처리의 지연은 궁극적으로 그때까지 발표된 세 차례의 「반혁명 활동 진압에 관한 지시」가 어떠한 행동을 ‘반혁명의 목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규정하지 않고, 각각

84) 周振想·邵景春 主編, 『新中國法制建設四十年要覽: 1949-1988』, 29쪽.

85) 「政務院關於加強人民司法工作的指示」(1950.11.3.), 『中華人民共和國司法行政歷史文件匯(1950-1985)』, 8쪽.

의 반혁명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 기준 없이 “유기징역” 혹은 “장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만 적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반혁명범의 처벌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의 부재는 사건에 대한 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곤란을 초래하였고 이것은 곧 혐의자에 대한 사범 처리의 지연으로 작동하였다. 중공중앙은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반혁명범의 처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로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반혁명범을 처벌한다는 합법성, 즉 법적 기준에 따라 처벌했다는 자기변호가 필요했던 것이었다. 이것은 중공중앙이 줄곧 가지고 있던 대중의 동요와 노동자·농민, 민주당파, 인민단체 등과의 ‘인민민주통일전선’의 결렬에 대한 두려움과 밀착되어 있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범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또한 일반적으로 국내외의 역사적 사실이 증명하듯 혁명 세력은 반혁명 세력과의 투쟁 과정에서 정권을 수립한 후 승리의 성과를 지키기 위하여 반혁명 세력을 처벌하는 형사법규를 제정하였다.⁸⁶⁾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의해 중공중앙은 1951년 2월 20일에 중앙인민정부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마침내 21일, 「中華人民共和國懲治反革命條例」(이하 「조례」로 약칭)⁸⁷⁾를 공포하였다.

이 「조례」에는 소련의 ‘반혁명죄’의 입법과 발전,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기 전에 시행된 법률들이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중국에서 ‘반혁명죄’라는 용어는 ‘반혁명’처럼 10월 혁명 이후의 러시아 형법으로부터 들어왔다. 1917년 11월 18일과 26일, 소련 인민위원회는 「전 국민에게 알리는 글」에서 舊관료의 반혁명 태업 및 기타 반혁명 투쟁의 문제에 관하여 지적하였고, 소련 중앙집행위원회는 1918년 1월 5일에 “누구든지, 어떠한 기관을 막론하

86) 張希坡 編, 앞의 책, 484-485쪽.

87) 「조례」의 각 조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확인. 또한 각 조항의 입법 이유에 대해서는 吳從雲·王火·王青·泉清陳의 『懲治反革命條例講解』(上海: 勞動出版社, 1951)를 참고.

고 부정한 방법으로 정권의 장악을 기도하는 직책자는 모두 반혁명죄이다.”라고 결정하였다. 1919년 11월 20일 선포한 「革命軍事法庭條例」에서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10개항의 반혁명죄를 적시하였으며, 1922년에 제정된 『소비에트 형법전』 제57조는 반혁명죄의 일반적인 개념의 제시와 함께 반혁명죄의 일반적인 유형을 확정하였다. 이후 『소비에트 형법전』을 수정하여 제1장 ‘國事罪’를 ‘반혁명죄’와 ‘소련에 대해 특별한 위험을 가하는 질서 관리를 방해하는 범죄’로 나누었다.⁸⁸⁾

중국에서도 역시 1925년에 5·30운동이 일어났을 때 노동자의 파업을 와해하는 반동 세력을 겨냥하여 별도로 반혁명 숙청에 대한 법이 제정되었다. ‘반혁명’이 형법으로 최초 입법된 것은 1927년 3월 30일 武漢國民政府에서 공포한 「國民政府反革命罪條例」이며 당시 ‘사법원 17년 解字 제16호 해석’은 “공산당 사건은 반혁명죄로 논해야 한다.”고 적시하였다. 이후 중화소비에트 공화국에서도 1934년 4월 8일, 「中華蘇維埃共和國懲治反革命條例」를 공포하여 반혁명죄의 개념과 이를 구성하는 범죄의 요건을 적시하였다.⁸⁹⁾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성된 1934년의 「中華蘇維埃共和國懲治反革命條例」⁹⁰⁾를 참고해오던 중공중앙은 1951년 2월에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처음으로 반혁명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전까지 참고해오던 1934년의 「中華蘇維埃共和國懲治反革命條例」와 비교하여 「조례」에 변경된 주요 법 조항은 다음과 같았다.

88) 張希坡 編, 앞의 책, 485-487쪽.

89) 張希坡 編, 위의 책, 2-5장; 王奇生, 앞의 책, 118쪽; 張晉藩 主編, 한기종외 옮김, 『중국법제사』, 서울: 소나무, 2006. 802쪽.

90) 「中華蘇維埃共和國懲治反革命條例」의 내용은 韓延龍·常兆儒, 『中國新民主主義革命時期根據地法制文獻選編』 第3卷(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1. 5-11쪽)을 참고.

〈표1〉 1934년 「中華蘇維埃共和國懲治反革命條例」와
1951년 「中華人民共和國懲治反革命條例」의 주요 내용 비교

	1934년 「中華蘇維埃共和國懲治反革命條例」	1951년 「中華人民共和國懲治反革命條例」
반혁명 행위에 대한 정의	제2조 소비에트정부 및 노동자·농민 민주혁명을 파괴 혹은 전복하려는 모든 시도, 토호·지주·자본가 계급의 통치자를 회복 혹은 유지시키려는 의도는 어떠한 방식을 사용했든지 간에 모두 반혁명 행위다.	제2조 인민민주정권을 전복시키고, 인민민주사업을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반혁명은 모두 본 조례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처벌 연령에 대한 규정	제37조 연령이 16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본 조례가 열거한 죄를 범한 경우 이 조문의 규정에 따라 감경하여 처벌한다. 예를 들어 14세 이하의 영아의 경우 교육기관이 감화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삭제
소급효	-	제18조 본 조례 시행 이전의 반혁명 범죄 역시 본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기수와 미수의 분리 적용	제32조 비록 본 조례가 규정한 범죄 행위에 대해 기도했으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 자(미수범), 혹은 이 범죄 행위를 따른 자는 감경하여 처벌한다.	삭제
회도문 에 대한 언급	제14조 반혁명을 목적으로 종교 신앙을 이용하고, 주민을 선동하고 소비에트 및 그 법령을 파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 죄질이 비교적 경미한 자는 6개월 이상의 감금에 처한다.	제8조 봉건 회도문을 활용하여 반혁명 활동을 진행한 자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한다. 그 죄질이 비교적 경미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조문의 수	41개 조문	21개 조문으로, 하위 항으로 정리됨.
무기징 역형 용어의 변화	-	무기징역형이 포함.
	‘감금’에 처한다.	‘징역’에 처한다.

두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여러 차이점이 보인다. 우선 “소비에트정부”

가 “인민민주정권”으로 바뀐 제2조는 토지혁명전쟁 시기의 중화소비에트정부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식 성립으로 상황이 바뀐 것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1934년의 「中華蘇維埃共和國懲治反革命條例」에서는 반혁명을 목적으로 한 “종교 신앙”으로 지목되어 있던 것이 1951년의 「조례」에서는 “회도문”으로 특정된 것 역시 중요한 변화이다. 그리고 무기징역형이 새롭게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인민(피해자)이 유기징역으로는 흡족해 하지 않을 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는 것이 사법부의 해석이었다.⁹¹⁾ 이러한 내용으로 보건대 판결에 있어 민심의 동향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행위 시 법률에 따라 범죄를 처벌하는 행위시법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아닌, 범죄에 소급효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내세운 제18조 “본 조례 시행 이전의 반혁명 범죄 역시 본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수범과 미수범에 대한 구분을 배제한 것, 소년범에 대한 감형 조항이 삭제된 것도 달라진 점이다. 이러한 법 제정을 통해 毛澤東은 법이 주는 강제성과 더불어 반혁명 진압이 법에 근거하여 처벌된다는 합법성과 자기변호의 명분을 얻을 수 있었다.

「조례」의 제정을 두고 당시 법조계에서도 여러 의견을 내놓았다. 中央人民政府最高人民檢察署 서장 羅榮桓은 조례를 공포한 것은 신중국 입법 공작 중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며 인민민주독재 정치를 견고히 하는 중요한 조치라면서, 이것은 「共同綱領」 제7조의 정신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는 이번 「조례」가 간부와 대중에게는 반혁명적 활동을 진압하는 법률적 무기를 제공하고, 반혁명에 관한 범죄를 재판하는 재판관에게는 형량의 기준을 제시해 주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조례」를 통해 수많은 인민의

91) ‘무기징역’ 및 ‘장기징역’에 관한 西南軍政委員會의 질의에 1951년 3월 20일에 사법부가 내놓은 해석은 다음과 같다. “현재 유기징역으로는 인민(피해자)이 흡족해 하지 않을 때 무기징역을 입시로 사용하고 있다. 유기징역의 최고 형기는 일반적으로 10년이며, 각 사건의 정황에 따라 20년 혹은 25년이 될 수도 있다. 장기징역은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을 말한다.” 「司法部關於‘無期懲役’及‘長期懲役’的兩點疑義的解答」(1951.3.20.), 『中華人民共和國司法行政歷史文件匯編(1950-1985)』, 749쪽.

반혁명 투쟁에 대한 적극성이 고무되며 적을 공격하는데 효과적인 준비를 갖추 수 있게 되었다면서, 반혁명에 대한 투쟁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였다고 평가하였다.⁹²⁾

中央人民政府法制委員會 부주임위원이자 유명한 법학자 陳瑾昆은 「조례」의 입법 정신과 입법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는 반혁명을 진압하는 것은 토지개혁, 抗美援朝와 함께 현재 중국 인민의 3대 운동이며, 「共同綱領」 제7조가 규정한 것은 혁명의 승리를 견고히 하기 위함이고 인민민주독재 정치의 국가는 모든 반혁명 활동을 반드시 진압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⁹³⁾

또한 법제위원으로서 그는 반혁명죄의 성질과 「조례」의 제3조에서 제13조가 규정한 11종류의 반혁명죄 유형에 대해 상세하게 해석하였다. 그 중 ‘자본주의 형법’, ‘구형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국민당 정권 시기 형법에서의 內亂罪·外患罪와 중화인민공화국의 「조례」의 차이점을 조망하는데 집중하였다. 그는 제2조가 “인민민주정권을 전복시키고, 인민민주사업을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반혁명은 모두 본 조례에 의거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한 것은, 제3조에서 제13조에 이르는 각종 반혁명 범행에서 ‘고의성’ 이외에 반드시 “인민민주독재 정권을 전복하려는 것과 인민민주사업을 파괴하려는 목적”, 혹은 그 중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임을 설명하면서 반혁명죄가 目的犯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⁹⁴⁾

목적범은 범죄의 구성요건 상 고의 이외에 일정한 행위 목적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가리킨다. 陳瑾昆은 “자본주의 국가의 형법은 일반적으로 국가 자체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를 내란죄와 외환죄로 구분하고 내란죄를 목적범

92) 「爲貫徹實施 <懲治反革命條例>給各級人民檢察署的指示」(1951.3.21.), 中央人民政府法制委員會 編, 『鎮壓及革命』 第2輯, 1951. 38쪽.

93) 「關於 <中華人民共和國懲治反革命條例>的一點說明意見」, 中央人民政府法制委員會 編, 『鎮壓及革命』 第2輯, 195쪽.

94) 「關於 <中華人民共和國懲治反革命條例>的一點說明意見」, 위의 책, 196-197쪽.

으로 정하였으나, 중화인민공화국은 인민의 국가로 국가는 인민을 위해 복무하며 국가 자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인민민주정권과 인민민주사업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러한 죄를 범하는 자는 모두 중국 인민 중의 변절자로 제국주의와 공모한 것이 아니므로 내란·외환의 유형 구분은 필요 없고 모두 ‘반혁명’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하였다.⁹⁵⁾

또한 「조례」가 규정한 죄는 모두 반드시 제2조가 규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제3조에서 제8조, 제12조, 제13조는 그 자체가 반혁명의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반혁명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지 않았지만, 제9조에서 제11조는 그 범죄 행위가 일반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혁명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문구를 삽입해주어야 한다고 의견을 보충하였다.⁹⁶⁾

그런데 毛澤東의 관심사는 반혁명 관련 법의 제정에서 그치지 않았다. 법을 제정함으로써 반혁명 진압이 합법성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은 반혁명 진압에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대중을 동원하는 것에 더욱 비중을 두었다. 대중을 동원하는 기제는 과거 농촌에서의 토지개혁 때와 마찬가지로 대중의 원한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규탄대회 [公訴會]의 형식에서 빛을 발했다. 악패나 일관도와 같은 중국공산당이 지목한 반혁명 집단에 의한 피해자 가족이 규탄대회의 연단에 올라가 그들이 받은 상처와 피해를

95) 「關於「中華人民共和國懲治反革命條例」的一點說明意見」, 앞의 책, 197쪽.

96) 「關於「中華人民共和國懲治反革命條例」的一點說明意見」, 위의 책, 197쪽. 한편 沈瑋瑋는 자신의 연구에서 「조례」의 제정 이후 ‘反革命分子’가 ‘反革命犯’으로, ‘反革命事件’이 ‘反革命案件’으로 그 명칭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 내포하고 있는 함의에 집중하였다. 그에 따르면 ‘分子’와 ‘犯’은 중대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반혁명분자’라는 용어는 일종의 계급투쟁의 의미가 짙은 것으로, 선전을 위한 전문용어로 쓰였으며 무죄추정의 형법 가치가 적용되지 않은 채 통속화·구어화된 것이다. 이것은 대중과 친밀해지기 위한 단어였으며 대중을 발동시키고 적을 공격하는데 이용되었다. 그러나 ‘반혁명법’은 유죄추정 원칙의 적용을 받는 동시에 법률상 범죄 행위인 것이다. 한편, 중국에서 ‘반혁명 사건’은 일반적인 의미상의 사정·정황을 의미하는데, ‘반혁명안건’이 되는 순간 이것은 법률상의 사건이 된다. 沈瑋瑋는 반혁명 진압이 이루어지던 기간 중 반혁명 사건은 최종적으로 모두 반혁명 안건으로 처리된 사실을 강조하며 이러한 술어의 변화는 중국공산당의 혁명 행동이 법제화되어가는 과정과 시도였다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沈瑋瑋, 앞의 논문, 149-150쪽.

대중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는 순간, 피해자 개인의 아픔은 순식간에 모두의 아픔으로 증폭되곤 했다. 이것은 확실히 정책이나 법보다 공격적인 방법이 었다.

2월 18일 「중공중앙정치국 확대회의 결의 요점」에는 “사형의 선고는 반드시 대중을 거치도록 하고 민주인사가 참여하여 그 내막을 알게 하라.”⁹⁷⁾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조례」가 발표되고 바로 다음날인 2월 22일, 北京市委는 華北局에 반혁명을 진압하는 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사형 선고를 받은 반혁명범들의 형을 집행하는 시점에 가서 區 이상 각급인민 대표회의를 열고 반혁명범의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 반혁명에 대한 대중의 원한을 제고시킨 후에 형을 집행하겠다⁹⁸⁾는 것이었다. 다시 3일 후에 중공중앙은 이러한 내용이 모든 대도시들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공식화하였다.⁹⁹⁾

3월 중순부터 북경시는 신문과 방송, 좌담회, 규탄대회, 전람회 등을 통해 반혁명 진압에 대한 선전을 진행하였다. 북경시 인민라디오는 4일 연속으로 반혁명을 규탄하는 녹음을 방송하였고 西郊·北郊 일대에 확성기를 설치하여 대중이 청취할 수 있게 하였다.¹⁰⁰⁾ 3월 24일에 中山公園 音樂堂에서 북경시 區 각계인민대표확대연석회의가 개최되었을 때에는 이미 체포되어 있던 반혁명범 중에서 대중의 원한이 큰 일부 사람들이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공개적인 규탄과 함께 공개 재판을 받았다. 바로 다음날, 北京市軍官會軍法處는 대중 앞에서 이들 199명의 반혁명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였다. 중국 공산당의 자료에 따르면 그 자리에 있던 대중은 환호했고, “이 자들은 죄가

97) 「中共中央政治局擴大會議決議要點」(1951.2.18.), 『毛澤東文稿』(1951.1-1951.12), 127쪽.

98) 「北京市第三屆第1次各界人民代表會議關於鎮壓反革命的決議」(1951.2.22.), 『國民經濟恢復時期的北京』, 159쪽.

99) 「大都市應當認真地嚴萬地大規模地鎮壓反革命」(1951.2.25.), 「建國初期鎮壓反革命文電十五編」, 『黨的文獻』 2-2, 1988. 34쪽.

100) 「北京鎮壓反革命形成巨大群眾運動 城郊各區紹介控訴大會 人民積極檢舉併協力捕捉反革命分子」, 『發動群眾鎮壓反革命: 紹介北京市大張旗鼓鎮壓反革命的情況』, 北京: 群眾出版社, 1951. 9쪽.

극악무도하여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야 했다.”, “인민정부는 사람을 죽일 때 우리들과 상의한다. 우리가 주인 역할을 한다.”, “인민이 죽이라고 하면 죽인다. 진정으로 인민정부다.”라는 반응이었다고 한다.¹⁰¹⁾

3월 31일, 北京市委는 중공중앙의 반혁명 진압 정책이 대중으로부터 긍정적인 호응과 적극적인 지지를 얻었다고 판단하고 그것이 가능했던 원인으로 규탄대회와 전담회의 개최 등을 지목하였다. 과거에는 반혁명 세력을 진압하기 위한 선전에서 획일적으로 “죄가 극악무도하다.”, “피맺힌 원한이 쌓여 있다.”,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른다.” 등의 관용어만을 반복했고, 진압의 방식 역시 융통성이 없어서 설득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규탄대회, 전담회, 신문, 방송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여 생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중에게 반혁명 진압에 대해 선전했고, 사형의 집행 역시 북경시 각계인민대표회의·북경시 협상위원회확대회의의 토론과 대중의 규탄대회를 거친 것이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하였다.¹⁰²⁾ 그리고 毛澤東은 이 보고서를 전국 각지에 전달하여 北京市委가 취한 방법을 모두 본받기를 바란다고 촉구하였다.¹⁰³⁾

3월 25일부터 4월 10일까지 북경의 각 區는 크고 작은 대중회의를 평균 200여 차례씩 개최하였고, 그 중 西郊分局의 경우 710여 차례를 열었다고 알려져 있다. 북경시 전체에서 회의에 참석한 대중은 모두 30만 명 정도였다. 회의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당의 반혁명 진압 정책의 내용을 설명하고 소형 규탄대회를 조직하는 것과 관련되었다. 각 파출소는 일상 업무와 결합하여 주민에게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규탄대회를 선전하고 그들을 조직하여 방송을 청취하게 했으며 반혁명 진압에 관한 글과 사

101) 『中共北京市委關於大張旗鼓地處決反革命罪犯的反映和經驗致中央華北局的報告』(1951.3.31.), 『國民經濟恢復時期的北京』, 175-176쪽.

102) 『中共北京市委關於大張旗鼓地處決反革命罪犯的反映和經驗致中央華北局的報告』(1951.3.31.), 위의 책, 177-178쪽.

103) 『轉發北京市委關於大張旗鼓經過群眾進行鎮反的報告的批語』(1951.4.2.), 『毛澤東文稿』(1951.1-1951.12), 219쪽.

진·그림 등을 보고 읽게 하였다. 일부 파출소는 방법용 벨의 회로에 확성기를 설치하였고 교외 지역에서는 지붕이나 산의 정상에 방송을 설치하여 농민에게 반혁명 진압에 대한 선전을 진행하였다.¹⁰⁴⁾

중국공산당의 기록에 따르면 4월 26일에 天橋 小桃園 극장에서 악패 ‘坐地虎’ 白文光에 대한 규탄대회가 열렸을 때 피해자 陳鴻昆은 당이 자신을 위하여 복수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대중은 격분하여 큰 소리로 “죽은 자를 위해 복수하자. 피로 피를 씻어내자.,” “결연하게 반혁명을 진압하자. 정부가 인민을 위해 해악을 없애는 것을 지지하자.,” “모 주석을 고맙게 여기자. 공산당 만세”라고 외쳤다고 한다. ¹⁰⁵⁾

이러한 규탄대회는 과거 중국공산당의 농촌 토지개혁에서부터 실시된 대중 동원 방식으로 그때의 경험이 이번에는 도시의 반혁명 진압에 도입된 것이다. 농민들은 규탄대회를 거쳐 향신가족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 버리기도 했는데 이러한 운동을 통틀어서 ‘청산’이라고 불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을 통해 ‘翻身’했다. 이제 생애 처음으로 농민들은 자신의 운명이 무언가 통제 가능한 것으로 느껴졌고, 그들은 스스로를 자연적·사회적 세력의 피동적인 희생물에서 새로운 세계의 적극적 건설자로 변화시켰다.¹⁰⁶⁾

그리고 1951년 5월 15일에 毛澤東은 이것을 하나의 체제로 정착시켰다. 그는 「반혁명 진압은 반드시 대중노선을 실행해야 한다」는 글을 발표하여 피해자 가족이 대표회의, 규탄대회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더 많이 반혁명범에 대해 규탄할 수 있게 하도록 요구하였고¹⁰⁷⁾, 18일과 20일에 市政府는 북경시 각계인민대표회의·북경시 협상위원회확대회의를 개최하여 市公安局으로부터 받은 500명이 넘는 반혁명범의 기록을 조사하고 피해자들의 규탄대

104) 「北京鎮壓反革命形成巨大群眾運動 城郊各區紹介控訴大會 人民積極檢舉併協力捕捉反革命分子」, 『發動群眾鎮壓反革命: 紹介北京市大張旗鼓鎮壓反革命的情況』, 10쪽.

105) 陳建亭·李萬啓·毛殿良, 『鎮壓天橋惡霸』, 『蕩漾污垢』, 213-214쪽.

106) William Hinton, 강철성 옮김, 『翻身』, 서울: 풀빛, 1986. 1권 192쪽, 2권 358쪽.

107) 「鎮壓反革命必須實行黨的群眾路線」(1951.5.15.),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毛澤東文集』 第6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9. 162쪽.

회를 청취한 후 악패 白文光과 孫鴻亮을 포함하여 6명을 총살하는데 합의하였다.¹⁰⁸⁾

이렇듯 엄연히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이 규정해 놓은 사형 기준이 아닌 ‘피해자들의 규탄대회를 청취한 후’ 사형수가 결정되었다. 법정인 아닌 광장에서, 법리가 아닌 박수가 곧 판결이 되는 상황을 연출한 毛澤東의 의도는 무엇일까?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규탄대회를 통한 대중동원의 방식이 마르크스-레닌의 이론인 프롤레타리아 독재에서 기존의 국가 기구의 사용을 뛰어넘어 인민의 참여를 통한 새로운 사회 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방법론의 모색이었다는 점이다. 중국공산당은 다양한 인민 동원 방식을 통해 부르주아민주주의의 방식인 간접 통치와는 다른, 인민의 직접 통치의 구체적인 방식이자 새로운 방식의 하나를 만들고자 하였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의 핵심 중 하나는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인 ‘프롤레타리아 독재’ 단계를 설정한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피착취자인 다수가 착취자인 소수를 억압한다. 기존 사회의 착취자·억압자에 대한 폭력적 억압, 그들의 자유에 대해 일련의 제한을 가하는 것, 그들을 민주주의로부터 배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민주주의가 겪게 되는 변화라는 것이다.¹⁰⁹⁾

인민 다수가 자신들의 억압자를 억압한다면 ‘특수한 억압 권력’은 이미 더는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는 사멸하기 시작한다. 특정 계급을 억누르기 위한 ‘특수한 권력’으로서의 국가에서 인민의 다수, 즉 노동자와 농민의 일반적 권력에 의한 억압자의 억압으로의 전환이라는 마르크스의 이론에서 이처럼 매우 분명하고 중요한 사실이 아주 완전히 망각되고 있다고 레닌은 지적하였다.¹¹⁰⁾

108) 陳建亨·李萬啓·毛殿良, 『鎮壓天橋惡霸』, 『蕩涤污垢』, 219쪽.

109) Vladimir Il'ich Lenin, 문성원·안규남 옮김, 『국가와 혁명』, 과주: 돌베개, 2015. 147-153쪽.

그러나 이러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이 현실에 적용될 때 문제가 발생했다. 이론은 대중이 소수의 착취자나 특수한 억압 세력 대신에 전면에서 나서는 것을 통해 국가의 사멸로 이어지는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것이었으나, 현실에서는 당-국 체제의 강화, 즉 전제체제의 구축으로 전개된 것이다.

한편 Julia Strauss와 洪長泰는 바로 이 지점에서 규탄대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Julia Strauss는 반혁명 진압과 농촌 토지개혁에서 지주에 대한 공개적인 규탄대회는 새로운 국가에 의한 쇼였다고 주장한다. 규탄대회가 대중의 감정을 사로잡기 위한 장치로써 의도적으로 사용되었고, 적으로 규정된 자들에 대한 증오심을 자극시키고 대중을 정권에 대한 긍정적인 지지의 방향으로 동원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자발적인 행사처럼 보였지만 사실 극적인 효과를 노리고 연출된 것이었다면서, 지역 간부들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중의 감정을 부추길 수 있는 사건들을 선택하였고 선택된 사람들은 무대 위에서 언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사전에 지시받았다고 판단하였다.¹¹¹⁾

洪長泰 역시 참가자들의 맹렬한 비판은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인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중국공산당에 의해 주도면밀하게 쓰인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고도로 조작된 드라마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중국공산당은 이것을 대중 동원으로 불렀다는 것이다. 그는 규탄대회를 통해 증오와 분노가 격양된 참여자들이 종종 또 다른 반혁명분자를 찾는 집단 히스테리 상태로 빠져들었다고 지적하였다.¹¹²⁾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劉瑜는 ‘감정 동원(Emotion Mobilization)’이라는 표

110) Vladimir Il'ich Lenin, 앞의 책, 82-83쪽.

111) Julia Strauss, "Morality, Coercion and state Building by Campaign in the Early PRC: Regime Consolidation and after, 1949-1956", China Quarterly, Vol. 188, Dec. 2006. p.906-907.

112) Chang-tai Hung(洪長泰), 앞의 논문, p.416-417.

현으로 접근하였다. 그녀는 毛澤東의 혁명 담론 중 희생 담론은 대량 동원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히틀러나 스탈린도 사용한 방식이라면서, 중국에서는 착취와 억압이 희생 담론의 중심이었다고 파악하였다. 중국공산당은 규탄대회를 통해 억압받는 계급의 모든 사람들을 동원하여 그들의 희생을 개인화함으로써 분노의 감정을 일으켰고, 이것이 곧 대중의 동원을 이끌어낸 연료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중국공산당이 1949년에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는 이러한 분노의 감정을 고착시키기 위해 규탄대회가 제도화 되었다고 분석하였다.¹¹³⁾

두 번째로 毛澤東의 의도를 파악함에 있어 규탄대회가 정치적·사회적 통제를 위한 메카니즘으로써 기능했다는 사실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것은 중국공산당이 스스로의 예상과 다르게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신속하게 승리를 거둔 것과 관련이 있다. 1948년 봄에 화북 지역의 전세가 중국공산당에게 유리하게 진전되었을 때조차도 毛澤東은 아직 3년 정도 지나야 승리할 수 있다고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그의 예측보다 너무 일찍 중국 전역을 통치해야 하는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다.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은 원래 도시의 지식인 출신이었으나 그들 대부분은 과거 20여 년간 농촌에서 투쟁해야 했고 농민간부들의 경우 도시는 생소한 곳이었다. 중국공산당은 제1차 국공합작의 분열 이후로 농촌혁명의 노선을 견지하면서 농촌근거지 확장에 집중해왔고, 1946년 4월에 점령한 하얼빈을 제외하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까지 대도시를 수년간에 걸쳐 통치해본 경험이 없었다. 따라서 중국공산당 통치 구역의 갑작스런 확대는 당으로 하여금 전국을 통치하기 위한 인원과 기능의 부족함을 깊이 느끼도록 하기에 충분하였다.¹¹⁴⁾

113) Yu Liu(劉瑜), “Maoist Discourse and the Mobilization of Emotions in Revolutionary China”, *Modern China*, Vol. 36(3), May 2010. pp.337-339.

114) Roderick MacFarquhar 엮음, 김재관·정해용 옮김, 『중국현대정치사: 건국에서 세계화의 수용까지, 1949-2009』, 서울: 푸른길, 2012. 42-43쪽; Maurice Meisner, 김수영 옮김,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1, 서울: 이산, 2010. 121-122쪽; 이원준, 「중국공산당의 도시 接管 정책과 하얼빈 통치방침의 변화」, 『도시연구: 역사·사회·문화』 13, 2015. 88쪽.

이렇게 黨-政 기구가 사회의 저변에까지 확장되지 못했으며 그 기구를 담당할 간부 인력도 충분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중국공산당이 사회를 직접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적극적’인 호응 없이는 사회를 운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¹¹⁵⁾ 이때 규탄대회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권규범에 대해 최대한의 교육을 하도록 기여했다.¹¹⁶⁾

이러한 상황에서 법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국가제도 아래에서 법이 국가 폭력의 작동을 합리화시킨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1949년 3월 5일부터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체회의에서 毛澤東은 ‘인민민주주의 독재’에 대해 설명하면서 중국공산당이 노동자-농민의 동맹을 기초로 혁명적 지식인, 도시소자본가 계급, 민족자본가계급과 단결하는 것은 혁명의 시기에는 반혁명 세력을 고립시키고, 혁명이 승리한 후에는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¹¹⁷⁾

이 내용은 6월 30일에 발표된 「인민민주주의 독재에 관하여」의 글에서 공식화되었다. 毛澤東은 법정, 경찰, 군대 등의 국가기구에는 계급이 계급을 억압하는 도구라고 밝히면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인민의 범주를 노동자 계급, 농민, 소자본가 계급, 민족자본가 계급으로 한정하였고, 중국공산당은 인민의 내부에서만 인정을 베풀고, 인민 바깥의 반동계급(국민당과 그 공범자)의 반동적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베풀지 않는다는 사실을 천명하였다.¹¹⁸⁾

9월 21일에 개최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계 전체회의의 개막사에서도 그는 제국주의자와 국내 반동파가 아직 자신들의 실패에 대해 단념하지 않

115) 박상수, 「1950년대 중국 혁명 연구의 5가지 논쟁적 테제 述論」, 『사총』 85, 2015. 182쪽.

116) Julia Strauss, 앞의 논문, p.908.

117) 「在中國共產黨第7屆中央委員會第二次全體會議上的報告」(1949.3.5.), 『毛澤東選集』 第4卷, 北京: 人民出版社, 1969. 1326-1327쪽.

118) 「論人民民主獨政」(1949.6.30.), 毛澤東文獻資料研究 編, 『毛澤東集』 第10卷, 東京: 蒼蒼社, 1983. 299-301쪽.

고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다면서 인민민주독재 정치의 국가제도가 이러한 국내외 적에 대항하는 효과적인 무기이며 중국공산당의 혁명 승리의 성과를 보장하는 무기임을 강조하였다.¹¹⁹⁾

이러한 인민민주주의독재 형태의 정권 구상은 인민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집단을 진압하고 처벌하는데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다. 칼 슈미트(Carl Schmitt, 1888-1985)는 “절대 군주의 권력은 제재 또는 통치를 위한 독재가 아니라 언제, 누구를 위해 법률 적용을 중단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라고 정의하였다. 인민민주주의 독재에서 ‘인민’과 ‘인민의 적’ 사이에는 늘 명확한 경계가 존재해야 했다. 인민은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와 선거권을 부여 받았지만, ‘인민의 적’, ‘반혁명세력’은 그들의 지배를 받아야 했다. 결국 인민민주주의독재란 ‘적’ 또는 ‘반혁명 세력’을 가혹하고 엄격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의미였다.¹²⁰⁾

중국공산당은 친구와 적이라는 양분된 개념을 수호하기 위해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가 말한 것처럼 특정 집단에 대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권리를 가질 권리’를 중단시키기에 이르렀다. 중국공산당은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반대로 법을 계급투쟁의 연장선이자 적을 없애는 도구로 생각하였다. 이렇듯 중국공산당에게 국가와 법은 사회 개개인의 가치 수호나 정의 등의 개념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사회주의 체제에 반대하고 정권에 저항하는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사용되었다.¹²¹⁾

119) 『인민일보』, 「中國人民政協第一屆會議上毛主席開幕詞」,

<http://www.people.com.cn/item/lianghui/zlhb/zz/1jie/newfiles/a1020.html>

120) Klaus Mühlhanhn, “Repaying Blood Debt: State Violence and Mass Crimes during the 1920’s in China”, Rethinking China in the 1950s, Mechthild Leutner(ed), 2007. p.36-37; Klaus Mühlhanhn, “Turning Rubbish Into Something Useful: Crime and Punishment in Mao’s China”, The People’s Republic If China At 60, Harvard University Fairbank Center, 2011. p.176.

121) Klaus Mühlhanhn, “Turning Rubbish Into Something Useful: Crime and Punishment in Mao’s China”, p.174-176.

집단 폭력은 언뜻 살펴보기에는 무작위적이거나 의도가 없이 무분별한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행위 이면에는 이것이 특정한 ‘합리성’에 따라 자행된다는 사실이 숨어있다. 합리성에 따른 집단 폭력, 집단 학살은 칼, 총, 화학 무기 등에 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비무장 상태의 개개인 전체를 섬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인 의도를 바탕으로 단계별로 조직된 행위를 가리킨다.¹²²⁾ 결국 1950년대 중국에서 사법체제가 법률적 제재 과정의 핵심 요소로 기능하긴 했지만 대중운동에 의한 집단 폭력 역시 사회·정치적인 규범을 효율적이고 직접적이며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유동적이고 비공식적인 메카니즘이었고, 이러한 방식의 규범과 시행은 인민들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다.¹²³⁾

이것과 관련하여 「조례」가 지니고 있던 한계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楊奎松은 「조례」가 정권을 전복시키고 정부의 민주 사업을 파괴시킬 ‘목적’을 수행한 자가 반혁명범이라고 규정하였는데 ‘반혁명범죄의 목적’과 ‘중대한 사건’이 무엇인지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조례의 이러한 특성이 결과적으로 대중과 관료들에게 반혁명 사건을 결정짓는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양산했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¹²⁴⁾ 그리고 「조례」가 열거한 다수의 범죄 행위가 대중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대중을 선전하고 고무시키기에 매우 어려웠을 것이고 대중의 이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그들의 분노가 큰 악패 등으로부터 착안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¹²⁵⁾

122) Klaus Mühlhanhn, “Turning Rubbish Into Something Useful: Crime and Punishment in Mao’s China”, p.176.; Klaus Mühlhanhn, “Repaying Blood Debt: State Violence and Mass Crimes during the 1920’s in China”, p.35-36.

123) Klaus Mühlhanhn, “Repaying Blood Debt: State Violence and Mass Crimes during the 1920’s in China”, p.36.; Klaus Mühlhanhn, “Turning Rubbish Into Something Useful: Crime and Punishment in Mao’s China”, p.180.

124) Yang Kuisong(楊奎松), “Reconsidering the Campaign to Suppress Counterrevolutionaries”, pp.109-110.

125) 楊奎松, 新中國鎮反運動始末(上), 20-21쪽. 그 밖에 1950년대 기독교에서 전개된 공소 운동에 대해 연구한 손장훈에 따르면 기독교의 공소 대회는 교회의 성직자, 신도, 기독교 단체

여기에 북경시 제3계 제1차 각계인민대표회의에서 北京市公安局 부국장 馮基平은 북경시의 전체 인민이 일치단결하여 반혁명 활동을 진압하는 정부에 협조하여 匪首, 慣匪, 악패, 특무, 반동적인 성격의 회도문의 수괴를 숙청하자고 호소하였고, 그 결과 「반혁명 진압에 대한 결의」가 통과되었다.¹²⁶⁾ 반혁명 진압에 대한 각계대표단의 동의를 이끌어낸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진압에 필요한 법도 완비되었고 각계의 동의도 얻었고 국외의 상황까지 국내의 반혁명 진압 정책에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는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중국공산당은 규탄대회를 단지 반혁명범에 대한 대중의 원한을 증폭시키는 것에만 사용하지 않았다. 공산당원은 대중의 원수들을 그들의 눈앞에서 처형함으로써 가장 자극적인 방법으로 원한을 갚아주었고 이것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공산당원에 대한 고마움과 당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졌다. 중국공산당은 법의 제정을 거친 뒤 규탄대회를 통해 반혁명을 공통의 적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진압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고, 새롭게 시작하는 정권에 대한 지지까지도 얻을 수 있었다. 이제 반혁명은 중국공산당만의 적이 아니라 전체 인민의 적이 되었으며, 이때부터 반혁명 진압은 하나의 ‘사회운동’이 되었다. 그리고 이때의 대중 동원 방식은 이후 毛澤東의 중국에서 여러 차례 사용되었던 대중 동원 방식의 원형이 되었다.

소속 인원들의 고발 연설로 시작되었는데 고발의 주된 명목은 외국인 선교사의 경우 스스로는 호의호식하면서 중국인들에게만 빈곤을 통한 영혼 구원을 강조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또한 손장훈은 기독교계에서 이루어진 공소운동이 국가 조직과 당 간부에 의한 일방적인 계획으로 집행되었거나 억압에 굴복한 비자발적 행위로 규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하면서, 목회자들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三自會의 협조는 국가가 부여한 권력을 이용하여 기독교계의 통합을 완수하려는 명확한 목적을 바탕으로 수행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손장훈, 「1950년대 전반기 중국공산당과 기독교계의 거버넌스 기제」, 『중국근현대사연구』 62, 2014. 200-203쪽; 손장훈, 「中華人民共和國 初期 中國基督教界 控訴運動과 大衆組織: 三自會의 활동을 중심으로, 1949-1955」, 『중국근현대사연구』 67, 2015. 220-222쪽.

126) 「北京市第三屆第一次各界人民代表會議關於鎮壓反革命的決議」(1951.2.28.), 『國民經濟恢復時期的北京』, 164쪽.

결론

본고는 1949년 중국 전역을 통치하기 시작한 중국공산당의 반혁명 진압 정책과 북경에서 진행된 반혁명 진압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다. 중국공산당은 국민당으로부터 정권을 바꾸려는 자신의 행보에 체동을 걸고, 정권을 장악한 후에는 체제를 안정시키고 지지 기반을 확보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방해한 자들을 ‘반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진압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공산당과 국민당 사이에서 벌어진 정치 투쟁의 연속이 아니었으며, 공산당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반혁명’이었던 것도 아니었다. 舊사회에서 세력을 떨친 자들 중 중국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하고 체제를 안정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체동을 걸던, 즉 국민당이 매복시킨 特務(간첩) 요원과 국민당과 관련이 있는 당파와 단체들, 여러 산업 부문에서 세력을 형성하여 소상인·노동자와 마찰을 빚고 있던 惡霸(악질 토호) 세력, 그리고 국민당 정부에 밀착하여 중국공산당에 반대하는 행보를 건던 一貫道의 지도자들이 주요 반혁명 행위자로 지목되었다.

이들 반혁명 세력에 대한 중공중앙의 진압은 각 집단에 대하여 다르게 진행되었다. 특무 요원과 국민당과 관련이 있는 당파 단체에 대해서는 자수하여 公安局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침으로 그들을 압박하고 통제하려 하였다. 악패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노동자-자본가 간 협의를 진행하도록 강제하고 工會를 결성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일관도에 대해서는 일관도 자체를 금지시키고, 그 지도자를 체포하는 조치를 취했다.

새로운 사회의 도래에 대한 반혁명적 저항과 그것에 대한 진압은 1949년 10월 1일에 중국공산당이 국민당과의 내전을 끝내고 정권 교체에 성공하여 정식으로 국가 집권당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구체화되었고 그에 따른 반혁명

세력의 저항 역시 거세졌다.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세 차례에 걸친 「반혁명 진압에 관한 지시」를 공포하여 반혁명 세력을 진압하였다. 특히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공포된 1950년 10·10지시에서는 반혁명범에 대한 판결을 신문에 보도하게 하는 등 반혁명 진압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강경해진 입장을 드러내었으며, 동시에 사법처리의 강화를 요구하며 각지에 산적해 있는 반혁명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지시하였다. 나아가 중공중앙은 1951년 2월 「中華人民共和國懲治反革命條例」를 제정하여 반혁명 진압에 법적 강제력과 합법성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곧 毛澤東의 지시에 따라 대중이 전면에 나서서 그들의 원한을 증폭시키는 규탄대회를 통해 범정이 아닌 광장에서, 법리가 아닌 박수에 의해 반혁명의 여부가 판정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엄연히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연출한 毛澤東의 의도는 그가 오랫동안 견지해온 대중노선-대중동원 사상뿐만 아니라 이것이 마르크스-레닌이 주장한 국가와 혁명에 대한 이론에서 혁명의 완성을 위해 부르주아 간접통치와는 다른, 인민의 직접통치·참여를 통한 새로운 사회 운영 체계의 확립을 위한 방법론의 모색이었다는 점과 연결하여 생각해야 한다.

반혁명 진압 규탄대회는 이후 毛澤東의 중국에서 대중을 동원하는 방식의 원형이 되었고 이제 반혁명은 중국공산당만의 적이 아니라 전체 인민의 적이 되었으며, 이때부터 반혁명 진압은 하나의 ‘사회운동’이 되었다.

필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진행된 반혁명 진압에 대한 전면을 파악하고 왜 하필 그들이 ‘반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진압되었는지도 이해하려면, 기존 학자들이 밝혀낸 체제 안정을 위한 파괴의 측면과 함께 본고가 조명한 부르주아민주주의 방식인 간접 통치와는 다른 인민의 직접 통치의 구체적인 방식이자 새로운 방식의 하나를 만들고자 했다는 건설의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본고는 반혁명을 진압하는 자들의 시각에 입각한 글이다. 즉 스스로를 ‘혁명’이라 부른 자들의 역사인 것이다. “반혁명 세력이란 혁명 세력이 그렇게 명명한 데 불과하며, 다수파의 의지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은 곧 반혁명 세력이었다.”는 1985년 노먼 햄슨(Norman Hampson, 1922-2011)의 말은 ‘반혁명’의 의미가 매우 임의적이라는 사실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의 논의는 반혁명이 혁명의 단순한 부정이나 혁명의 주도권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¹²⁷⁾ 이렇듯 역사의 주류가 비주류에게 씌운 모자가 ‘반혁명’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며 앞으로 같은 시기 ‘반혁명’으로 불리운 비주류, 패자의 목소리를 더욱더 드러내는 일을 필자의 다음 과제로 생각하려 한다.

127) 양희영, 「프랑스 반혁명 연구의 동향」, 『동국사학』 52, 2012. 388-389쪽.

참고문헌

I. 史料

- 公安部<羅瑞卿論人民公安工作>編輯組 編, 『羅瑞卿論人民公安工作』, 北京: 群衆出版社, 1994.
- 馬文彬·高狄·王茂林·王瑞璞 主編, 『中國共產黨建設全書(1921-1991)』 第6卷(黨的領導工作), 山西人民出版社, 1991.
- 毛澤東, 『毛澤東選集』 第3卷, 北京: 人民出版社, 1971.
- 毛澤東, 『毛澤東選集』 第4卷, 北京: 人民出版社, 1969.
- 毛澤東文獻資料研究 編, 『毛澤東集』 第8-10卷, 東京: 蒼蒼社, 1983
- 『發動群衆鎮壓反革命: 紹介北京市大張旗鼓鎮壓反革命的情況』, 北京: 群衆出版社, 1951.
- 北京市地方志編纂北平市委 編, 『北京志』 卷11(政法卷) 第25冊(公安志), 北京出版社, 2003.
- 北京市檔案管 編, 『國民經濟恢復時期的北京』, 北京: 北京出版社, 1995.
- 北京市檔案館 編, 『北平和平解放前後』, 北京出版社, 1988.
- 北京市檔案館·中共北京市委黨史研究室 編, 『北京市重要文獻選編』(1948.12-1949) 北京: 中國檔案出版社, 2001.
- 北京市檔案館·中共北京市委黨史研究室 編, 『北京市重要文獻選編』(1950) 北京: 中國檔案出版社, 2001.
- 吳從雲·王火·王青·泉清陳 『懲治反革命條例講解』, 上海: 勞動出版社, 1951.
- 劉光人·趙益民·於行前 主編, 『京都公安局長: 馮基平傳』, 北京: 群衆出版社, 1997.

- 周振想·邵景春 主編,『新中國法制建設四十年要覽(1949-1988)』,北京:群眾出版社,1990.
- 中共北京市委黨史研究室·北京市公安局 編,『蕩滌污垢-建國初期北京公安工作紀事』,北京:北京出版社,2000.
- 中共中央黨史研究室編,『中國共產黨的九十年』第2冊,北京:中共黨史出版社,黨建讀物出版社,2016.
-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建國以來毛澤東文稿』第1-2冊,北京:中央文獻出版社,1991.
-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建國以來劉少奇文稿』第1冊,北京:中央文獻出版社,1998.
-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建國以來劉少奇文稿』第2冊,北京:中央文獻出版社,2005.
-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第1-2冊,北京:中央文獻出版社,1992.
-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毛澤東文集』第6卷,北京:人民出版社,1999.
- 中共北京委黨史研究室 編,『北平的和平接管』,北京出版社,1993.
- 中央檔案館 編,『中共中央文件選集』第17-18冊,北京:中共中央黨校出版社,1992.
- 中央人民政府法制委員會 編,『鎮壓及革命』第2輯,1951.
- 中央人民政府政務院秘書廳印,『中央人民政府政務院政務會議文件彙輯』第3冊,1953.
- 中華人民共和國司法部 篇,『中華人民共和國司法行政歷史文件匯編(1950-1985)』,北京:法律出版社,1987.
- 彭真,『論新中國的政法工作』北京:中央文獻出版社,1992.
- 韓延龍·常兆儒,『中國新民主主義革命時期根據地法制文獻選編』第3卷,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1.
- 海淀區公安分局黨史公安史辦公室,「海淀地區取締反動會道門一貫道」,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北京市海淀區委員會文史資料委員會,『海淀文史選編』第7輯,1993.
- 「建國初期鎮壓反革命文電十五編」,『黨的文獻』2-2,1988.

「葉劍英在北平市委高級幹部會上的報告」(1948.12.19.), 『北京黨史』 114-1, 1999.

II. 研究書

김일평, 『중국혁명과 군중노선』, 서울: 정음사, 1987.

로더릭 맥파커(Roderick MacFarquhar) 엮음, 김재관·정해용 옮김, 『중국현대정치사: 건국에서 세계화의 수용까지, 1949-2009』, 서울: 푸른길, 2012.

모리스 마이스너(Maurice Meisner), 김수영 옮김,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1, 서울: 이산, 2010.

박상수, 『중국혁명과 비밀결사』, 서울: 심산, 2006.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Vladimir Il'ich Lenin), 문성원외 옮김, 『국가와 혁명』, 파주: 돌베개, 2015.

신규환, 『북경똥장수』, 서울: 푸른역사, 2014.

알렉산더 라비노위치(Alexander Rabinowitch), 류한수 옮김, 『혁명의 시간』, 서울: 교양인, 2008.

윌리엄 힌튼(William Hinton), 강칠성 옮김, 『翻身』, 서울: 풀빛, 1986.

李德彬, 양필승·윤정분 옮김, 『중화인민공화국경제사』 1, 서울: 교보문고, 1989.

이완중, 『10월혁명사』, 서울: 우물이 있는 집, 2004.

임상범, 『현대중국의 출발』, 서울: 일조각, 2000.

자크 고드쇼(Jacques Godechot), 양희영 옮김, 『반혁명』, 서울: 아카넷, 2012.

존 리드(John Reed), 서찬석 옮김, 『세계를 뒤흔든 열흘』, 서울: 책갈피, 2005.

孔樣濤·劉平 主編, 『我看中國秘密社會』, 廣西人民出版社, 2002

譚松林 主編, 『中國秘密社會』 第6, 7卷, 福建人民出版社, 2002.

孟慶濤, 『革命, 憲法, 現代性』, 北京: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12.

龐松, 『中華人民共和國史 1949-1956』, 北京: 人民出版社, 2010.

- 邵繼, 『秘密社會與中國革命』, 北京: 商務印書館, 2010.
- 楊奎松, 『中華人民共和國建國史研究』, 南昌: 江西人民出版社, 2009.
- 王奇生, 『革命與反革命』,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0.
- 柳建輝 主編, 『中國共產黨執政歷程』 第2卷, 北京: 人民出版社, 2011.
- 張希坡 編, 『中華人民共和國刑法史』, 北京: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1998.
- 周建超, 『秘密社會與中國民主革命』, 福建人民出版社, 2002.
- Carl Riskin, *China's Political Economy*, Oxford University, 1987.

III. 研究論文

- 박상수, 「1950년대 중국 혁명 연구의 5가지 논쟁적 테제 述論」, 『사총』 85, 2015.
- 박현미, 「국공내전시기 국민정부의 攤販 정책과 반향: 1945-1949년 北平을 중심으로」(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손승희, 「중국 토비·비밀결사와 혁명」, 『대동문화연구』 43, 2003.
- 손장훈, 「1950년대 전반기 중국공산당과 기독교계의 거버넌스 기제」, 『중국 근현대사연구』 62, 2014.
- 손장훈, 「中華人民共和國 初期 中國基督教界 控訴運動과 大衆組織: 三自會의 활동을 중심으로, 1949-1955」, 『중국근현대사연구』 67, 2015.
- 양희영, 「프랑스 반혁명 연구의 동향」, 『동국사학』 52집, 2012.
- 유장근,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직후 상하이 지역 홍만자회의 신국가체제 적응문제」, 『중국근현대사연구』 66, 2015.
- 윤형진, 「당치의 원칙과 공회」, 『중국근현대사연구』 65집, 2015.
- 윤형진, 「中華人民共和國 도시주민 조직 방식의 형성: 일본 점령기에서 건국 초기(1937-1954)의 北京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윤형진, 「黨治의 원칙과 工會: 1949년 前後의 北京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65, 2015.
- 이원준, 「중국공산당의 도시 통치체제 형성과정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이원준, 「중국공산당의 도시 接管 정책과 하얼빈 통치방침의 변화」, 『도시연구: 역사·사회·문화』 13, 2015.
- 임상범, 「북경 지역 경찰본부의 조직 내용」, 『대구사학』, 78집, 2005.
- 임상범, 「혁명 시대의 일상 폭력: 20세기 전반기 北京 거리에서 발생했던 금전 관련 사건들」, 『중국학보』 55, 2007.
- 장윤미, 「개혁시기 중국 신노동계급의 형성과 지연망 노동관행의 부활」,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111권 1호, 2009.
- 채준형, 「종교, 국가, 그리고 지역주민」, 『동양사학연구』 137, 2016.
- 채준형, 「근대 중국 신종교의 발전: 일관도를 중심으로」, 『사총』 88, 2016.
- 郭薇, 「關於反革命罪的歷史考察」, 碩士學位論文, 中國青年政治大學, 2007.
- 郭玉强, 「建國前後取締一貫道的鬭爭」, 中共中央黨史研究室編, 『中共黨史資料』第60輯,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1996.
- 孫惠强, 「1950, 北京鏟除一貫道邪教」, 『檔案春秋』 2009-9.
- 沈瑋瑋, 「政治術語的法制化實踐: 論1951年前後的反革命罪」, 『中國人民公安大學學報』 148-6, 2010.
- 楊奎松, 「新中國鎮反運動始末」, 『江淮文史』 2011-1.
- 楊奎松, 「新中國‘鎮壓反革命’運動研究」, 『史學月刊』 2006-1.
- 楊奎松, 「新中國鞏固城市政權的最初嘗試: 以上海‘鎮反’運動爲中心的歷史考察」, 『華東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4-5.
- 王娜, 「華北人民政府時期司法制度的文本研究」, 孫琬鍾 主編, 『共和國法治從這里啓程』, 北京: 知識產權出版社, 2015.

- 李格,「鎮壓反革命運動歷時一年說質疑」,『當代中國史研究』2008-5.
- 李露,「建國初期‘鎮反’刑事政策的實踐研究(1950-1953)」,博士學位論文,西南政法大學,2009.
- 丁以德,「江蘇省鎮壓反革命運動的社會歷史考察」,博士學位論文,南京大學,2011.
- 趙嘉朱,「綜論會道門的流傳演變與活動特点」,北京市檔案管編,『北京檔案史料』,2005.
- 陳竹君,「建國初期毛澤東鎮壓反革命思想論評」,『北京市人民警察學院學報』2008-6.
- 陳寒非,「污名身體:鎮壓反革命的司法實踐」,『政治法學研究』2-2,2014.
- 董成家,「刺殺毛澤東案偵破始末」,『世紀橋』,2010-22.
- Chang-tai Hung(洪長泰),“The Anti-Unity Sect Campaign and Mass Mobilization in the Early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China Quarterly*, Vol. 202, June 2010.
- Julia C. Strauss, “Paternalist Terror: The Campaign to Suppress Counterrevolutionaries and Regime Consolidatio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50-1953”,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 44, Issue 1, Jan. 2002.
- Julia Strauss, “Morality, Coercion and state Building by Campaign in the Early PRC: Regime Consolidation and after, 1949-1956”, *China Quarterly*, Vol. 188, Dec. 2006.
- Klaus Mühlhanhn, “Repaying Blood Debt: State Violence and Mass Crimes during the 1920’s in China”, *Rethinking China in the 1950s*, Mechthild Leutner(ed), 2007.
- Klaus Mühlhanhn, “Turning Rubbish Into Something Useful: Crime and Punishment in Mao’s China”, *The People's Republic If China At 60*, Harvard University Fairbank Center, 2011.

Yang Kuisong(楊奎松), “Reconsidering the Campaign to Suppress Counterrevolutionaries”, *China Quarterly* Vol. 193, March 2008.

Yu Liu(劉瑜), “Maoist Discourse and the Mobilization of Emotions in Revolutionary China”, *Modern China*, Vol. 36(3), May 2010.

『인민일보』, 「中國人民政協第一屆會議上毛主席開幕詞」

<http://www.people.com.cn/item/lianghui/zlhb/zx/1jie/newfiles/a1020.html>

Abstract

The Counter–Revolution Suppression Campaign in Beijing before/after Found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yun Ju Kim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paper is intending to do research on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regime establishment process before/afte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1949 through the counter–revolution suppression process in Beijing. This process is connected with the consideration about how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ried to get their regime to arrive safely by responding to the counter–revolution retroaction which occurred after the revolutio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suppressed those who put brakes on their move to switch power from the Kuomintang of China, and interrupted their efforts to stabilize the regime and secure the support base after seizing power under the name of ‘Counter–Revolution.’ This was not a continuation of political strife betwee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Kuomintang, nor were all forces against the Communist Party “anti–revolutionaries.” Among those who had power in the in the old regimes, the Communist Party designated those who

actively interrupted its move to dominate the government and stabilize the regime—spies(特務) planted by the Kuomintang and political groups related to the Nationalist Party— as well as the bandits(惡霸) that were in conflict with small merchants and laborers, and Yiguandao(一貫道) leaders who were opposed to the Communist Party and kept their close ties with the Kuomintang, as key anti-revolutionaries.

The Chinese Communist Party declared 「Directions of Counter-Revolution Suppression」 three times in the process. Among others, the directions on October 10, 1950 which was declared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revealed the more aggressive position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owards the counter-revolution suppression, and further in February, 1951, the same Party gave the legal force and legitimacy to their counter-revolution suppression by enacting 「中華人民共和國懲治反革命條例」.

However, the masses actively began holding rallies that amplified their sense of revenge, in which the judgements of anti-revolutionary tendencies were evaluated by the volume of applause, rather than legal reasoning, taking place in the public squares, rather than in courts of law. In addition, the essay by Mao Tse-tung published on May 15, 1951, titled “The Suppression of Anti-Revolutionaries Must Enforce the Will of the People,” is a direction that developed this trend into a system. The intent of Mao, who directed such political drama, was to seek methods of realizing the theories of Marx and Lenin the nation and revolutions; in this, Mao sought to establish a new system of social operation via direct rule and participation of the people, completely different from indirect rule by the bourgeoisie.

The Anti-Revolutionary Suppression Campaign became the prototype of mass

mobilization in Mao's China, and the anti-revolutionaries because the enemy of the entire people, not just a fo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s a result, anti-revolutionary suppression became a form of "social movement" in China from this point in history.

부록

(「中華人民共和國懲治反革命條例」)

제1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장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반혁명범을 처벌하고, 반혁명 활동을 진압하고, 인민민주독재 정권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특별 제정한다.

제2조 인민민주정권을 전복시키고, 인민민주사업을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각종 반혁명범은 모두 본 조례에 의거하여 처벌한다.¹²⁸⁾

제3조 제국주의와 결탁하여 조국을 배반한 자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한다.¹²⁹⁾

제4조 공직자를 선동·유인·매수하고, 무장군대 혹은 민병의 반역을 진행한 수괴 또는 반역을 지도한 자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한다. 기타 선동·유인·매수 혹은 반역에 참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 경

128) 陰謀顛覆政府罪는 인민정권을 전복할 음모를 지칭하고 국가의 정권을 탈취하려는 행위를 가리킨다. 陰謀分裂國家罪는 반혁명적 정변의 발동을 음모하거나 반란을 선동한 자, 통일적인 다민족국가를 분열하려는 행위를 가리킨다. 1927년 「國民政府反革命罪條例」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반혁명을 목적으로 군부대 혹은 무장폭도를 조직하거나 토비를 집합시키고 토지를 불법으로 점거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재산을 몰수한다. 항일전쟁시기 「陝甘寧邊區懲治漢奸條例」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항일정부를 전복할 기도를 하고 괴뢰정권의 건립을 음모한 자는 유기징역 혹은 사형을 선고하고 그 모든 재산을 몰수하거나 벌금형에 처한다. 張希坡 編, 앞의 책, 472-473쪽.

129) 祖國背叛罪는 외국과 결탁하고, 조국의 주권과 영토와 안전에 위해를 가할 음모를 펼치는 것을 지칭한다. 1927년 「國民政府反革命罪條例」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민정부에 무력으로 간섭하기 위하여 제국주의자 혹은 그 대표와 공모한 자는 제1조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1934년 「中華蘇維埃共和國懲治反革命條例」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무력으로 소비에트영토를 진공하기 위하여 국민당 군벌과 결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항일전쟁시기에는 주로 왕정위 정권과 결탁하여 항일근거지를 진공한 한간·매국범을 처벌하였다. 張希坡 編, 위의 책, 471-472쪽.

위가 중한 자는 가중 처벌한다.¹³⁰⁾

제5조 무기나 흉기를 소지한 대중 반란의 주모자·지휘자 및 기타 죄가 중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기타 적극적으로 참가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¹³¹⁾

제6조 간첩 혹은 적인을 돕는 행위 중 아래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한다. ① 국내외 적인을 위해 국가기밀을 절취·정탐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자. ② 적의 전투기·적의 군함을 위해 포격을 지시한 자. ③ 국내외 적인을 위해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거나 기타 군용물자를 제공한 자.¹³²⁾

130) 策動叛亂罪는 공작 요원, 무장 부대, 인민경찰, 民兵을 책동·공모·매수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投敵叛亦罪는 중국국민의 혁명을 배반하고 적에게 의탁하거나 혹은 적에게 체포된 후 적에게 투항하여 반혁명 활동을 진행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1934년 「中華蘇維埃共和國懲治反革命條例」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반혁명 세력에 투항하고 반혁명 세력에게 중화소비에트공화국의 각종 비밀을 보고하거나 반혁명 조직에 협조하여 소비에트에 반대하는 행위를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항일전쟁시기 「陝甘寧邊區懲治漢奸條例」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군부대를 조직하여 반역한 자, 총을 빼앗아 반란을 일으키고 적에 투항한 자는 모두 한간으로써 논하고, 그 경중에 따라 유기징역 혹은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몰수하거나 금고형에 처한다. 張希坡 編, 앞의 책, 473-474쪽.

131) 持械聚眾叛亂罪는 무기를 들고 대중을 규합하여 반혁명 폭란을 진행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1934년 「中華蘇維埃共和國懲治反革命條例」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반혁명 무장 부대를 조직하고 토비를 단결시켜 소비에트영토를 침범한 자 혹은 주민을 선동하여 소비에트 영토 내에서 반혁명 폭동을 수행한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한다. 항일전쟁시기 1942년 「晉冀魯豫邊區危害軍部隊妨害軍事工作治罪暫行條例」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폭동을 조직하고, 기관을 파괴하고, 군용 공용 물자를 약탈한 자, 혹은 항일군부대원을 살해한 자는 모두 사형,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張希坡 編, 위의 책, 474쪽.

132) 間諜罪는 외국의 간첩 기관에 참가하거나 외국 간첩 기관을 위해 중국공산당의 정보를 정탐하거나 훔치거나 제공한 것, 혹은 간첩 기관이 파견한 임무를 수행한 행위를 가리킨다. 特務罪는 국내 특무 조직에 참가하거나 특무 조직을 위해 정보를 훔치거나 정탐하거나 제공하는 것 및 특무 조직이 파견한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資敵罪는 적에게 무기와 탄약 혹은 기타 군용 물자를 제공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1927년 「國民政府反革命罪條例」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반혁명 행위를 목적으로 주요 軍·政의 비밀 정보·문건·그림을 수집 혹은 절도·정탐하고, 적군 혹은 세계제국주의와 은밀히 내통한 자는 모두 사형, 무기징역 혹은 一等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을 몰수한다. 1934년 「中華蘇維埃共和國懲治反革命條例」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반혁명을 목적으로 혹은 반혁명을 위하여 사례금을 취득하려 기도하고 각종 간첩 행위를 진행하거나 국가기밀성의 자료 혹은 군사

제7조 반혁명 특무 혹은 간첩 조직에 참가하고, 아래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한다. 그 경위가 비교적 가벼운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① 국내외 적인의 파견·잠복 활동을 받아들인 자. ② 해방 후 반혁명 특무 혹은 간첩 조직을 조직하거나 참가한 자. ③ 해방 전 반혁명 특무 혹은 간첩 조직을 조직하거나 지도한 자 및 기타 죄가 중대하고, 해방 후 공을 세운 것에 대해 속죄를 표현하지 않은 자. ④ 해방 전 반혁명 특무 혹은 간첩 조직에 참가하고, 해방 후 계속해서 반혁명 활동에 참가한 자. ⑤ 인민정부에 등록·자수한 후에도 계속해서 반혁명 활동에 참가한 자. ⑥ 인민정부의 교육석방을 거쳤으나 여전히 계속해서 반혁명특무·간첩과 연락하거나 반혁명 활동을 진행한 자.

제8조 봉건 회도문을 활용하여 반혁명 활동을 진행한 자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한다. 그 경위가 비교적 가벼운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¹³³⁾

제9조 반혁명을 목적으로 선동 또는 아래에 열거한 파괴, 살해 행위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한다. 그 경위가 비교적 가벼운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① 군사시설·공장·광산·삼림·농업·제

기밀을 전달·절도·수집하려 한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한다. 항일전쟁시기의 「懲治漢奸條例」 역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정탐·간첩 및 모든 기밀특무공작을 진행한 자는 한간으로 논하여 처리한다. 張希坡 編, 앞의 책, 475-476쪽.

133) 組織、利用封建迷信、會道門進行反革命活動罪는 봉건미신 활동의 형식 혹은 회도문을 이용하거나 조직하여 그것을 거점으로 삼고 반혁명 활동을 진행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中華蘇維埃共和國懲治反革命條例」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반혁명을 목적으로 종교 미신을 이용하여 소비에트 및 그 법령을 파괴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 경위가 비교적 가벼운 자는 6개월 이상의 감금에 처한다. 1948년 1월 「晉冀魯豫邊區破壞土地改革治罪暫行條例」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봉건미신 단체를 앞장서서 조직하거나 봉건미신 단체를 폭동에 이용하여 농민을 살해하거나 대중의 이익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한다.” 張希坡 編, 위의 책, 478쪽.

방·교통·은행·식량창고·위험방지 설비 혹은 기타 중요한 공적 사적 재물을 약탈하거나 파괴한 자. ② 유독물질·병균의 살포 혹은 기타 방법으로 사람·축산물·농작물에 중대한 재해를 일으킨 자. ③ 국내외 적인을 교사하여 시장을 혼란하게 만들거나 금융을 파괴한 자. ④ 공직자 혹은 인민을 기습하거나 살해·상해를 입힌 자. ⑤ 군대와 정부 기관·민주당파·인민단체의 명의를 차용하여 공문서 증명서를 위조하고 반혁명 활동에 종사한 자.¹³⁴⁾

제10조 반혁명을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한 도발·선동행위의 1에 해당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 경위가 중대한 자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한다. ① 대중 항거를 선동하고, 인민정부의 식량 징수·세금 징수와 공역·병역의 징발 혹은 기타 정부 법령의 실시를 방해하는 자. ② 각 민족·민주계급·민주당파·인민단체 혹은 인민과 정부 간의 단결을 이간질하도록 선동한 자. ③ 반혁명을 선전하여 선동하고 유언비어를 제조·유포한 자.¹³⁵⁾

134) 反革命破壞罪는 내용이 비교적 광범위하다. 이것은 폭발, 방화, 공공재산 약탈, 탈취, 탄약이나 총기류 절도 등 보통 형사 범죄와 유사하기에 그 구별은 주로 행위인이 반혁명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1927년 「國民政府反革命罪條例」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적군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국민정부를 방해하여 화약 혹은 기타 방법으로 철로 혹은 기타 교통사업을 파괴한 자, 군부대·선박 및 기타 군용건축물 혹은 탄약 및 기타 군용품을 적군에게 교부하거나 소각시켜 파괴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재산을 몰수한다. 반혁명을 목적으로 국가금융기관을 파괴하거나 그 신용에 위해를 가한 자는 二等에서 四等の 유기징역에 처한다. 1934년 「中華蘇維埃共和國懲治反革命條例」의 제19조와 제2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군인을 은닉하여 반혁명의 목적에 도달시키려 기도한 자, 혹은 반혁명을 목적으로 총기류 및 기타 군용품을 고의로 버리거나 파괴한 자, 군용품을 적에게 밀매한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한다. 그 경위가 비교적 가벼운 자는 1년 이상의 감금에 처한다. 제23조, 제2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반혁명을 목적으로 수륙교통, 공공창고, 국영기업 및 각종 건축물을 파괴시킨 자 혹은 반혁명을 목적으로 가옥 및 산림에 방화하여 국가 및 주민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 경위가 비교적 가벼운 자는 6개월 이상의 감금에 처한다. 張希坡 編, 앞의 책, 480-481쪽.

135) 反革命宣傳煽動罪는 반혁명을 목적으로 대중의 항거를 선동하고 국가 법률·정부 명령을 파괴하거나 반혁명의 구호, 전단지 및 기타 방법으로 반혁명 선전을 진행한 행위를 가리킨다. 1927년 「國民政府反革命罪條例」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각종 문자·그림으로 반혁명을 선전하는 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2천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반

제11조 반혁명을 목적으로 국경을 몰래 넘은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혹은 사형에 처한다.

제12조 많은 사람을 모아 탈옥하거나 폭동을 일으켜 탈옥시킨 주모자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한다. 기타 적극적으로 참가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¹³⁶⁾

제13조 반혁명 범죄자를 은닉하거나 은폐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경위가 중대한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혹은 사형에 처한다.

제14조 본 조례의 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중 아래에 열거한 정황이 있는 자는 참작하여 가볍게 처벌하거나 감경 혹은 처벌을 면제한다. ① 자발적으로 인민정부에 자수하고 잘못을 뉘우친 자. ② 적발되거나 폭로되기 전 혹은 그 후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속죄한 자. ③ 반혁명분자에게 협박이나 사기를 당했거나 확실히 자발적이지 않았던 자. ④ 해방 전 반혁명범죄

혁명을 목적으로 각종 유언비어로 造反을 선전하여 사회에 공황 상태를 유발시킨 자는 四等の 유기징역에 처하고 2천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934년 「中華蘇維埃共和國懲治反革命條例」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반혁명을 목적으로 반동적인 문자·그림·강연 및 담화를 사용하여 선전·선동 행위를 진행하거나 유언비어를 제조하여 사회에 공황을 발생시키고 소비에트 및 홍군의 신앙을 파괴시킨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 경위가 비교적 가벼운 자는 6개월 이상의 감금에 처한다. 항일전쟁시기, 「懲治漢奸條例」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제조한 자, 혹은 문자나 그림·간행물 등으로 항전을 파괴하도록 선전한 자 중 그 경위가 비교적 중한 자는 유기징역 혹은 사형에 처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벌금형에 처한다. 張希坡 編, 앞의 책, 479쪽.

136) 群眾劫獄罪和組織越獄罪는 교도소 외의 사람이 계획적으로 폭력 수단을 탈취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범죄를 조직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탈옥을 조직한 죄는 구속 중의 범인을 수괴로 하여 조직·계획·지휘 하에 감옥 내에서 탈주를 계획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혁명근거지의 감옥에서 탈옥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형사 법규 중에 탈옥한 자에 대한 처리 기준이 없었다. 건국 이후 감옥과 노동개조 중 탈옥하는 죄가 형사 법규에 규정되었다. 張希坡 編, 위의 책, 475쪽.

행위가 중대하지 않거나 해방 후 이미 회개하고 반혁명조직과 계속해서 연락하지 않은 자.

제15조 다양한 종류의 죄를 범한 자 중 사형과 무기징역의 선고를 받은 자 외에는 반드시 전체 형의 이하에서, 다양한 종류의 형 중 최고형 이상에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확정한다.

제16조 반혁명을 목적으로 한 기타 범죄 중 아직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은 자는 본 조례와 유사한 죄에 따라 처벌한다.

제17조 본 조례가 정한 죄를 범한 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제18조 본 조례 시행 이전의 반혁명 범죄 역시 본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 반혁명범죄자에 대해서 누구든지 인민정부에 폭로·밀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원한을 품고 모함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본 조례가 정한 죄를 범한 자는 군사관제시기 내에는 각지의 軍區司令部·軍事官制委員會 혹은 土匪 지휘기관이 조직한 군사법원이 본 조례에 근거하여 재판한다.

제21조 본 조례는 중앙인민정부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공포한 일로부터 시행한다.